

정책연구자료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

2008. 3.

유지호·최 원

보험연구원

머 리 말

전 세계적인 경엽화와 규제완화 추세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분류 및 규제에 대한 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외국 금융법률 통합과정에서 해당법률의 규제대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기준으로서 해당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가 이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향후 중첩성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분쟁발생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상품의 정의와 분류는 해당 규제법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며, 이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범위와 이를 취급하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도 모호한 규제대상을 명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 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모호한 금융상품의 정의로 인하여 규제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예금자보호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유자격자에 의한 판매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규제대상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제재를 받는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의 관련 법·제도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한 후 보험상품 및 보험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의 정착과 효율적인 규제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나 동 민

목 차

요 약	9
I. 서론	40
1. 연구목적	40
2. 연구방법	41
II.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필요성과 방법	43
1.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필요성	43
2.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방법	44
3.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와 금융업의 관계	45
4. 보험상품 정의에 대한 기존 연구	46
III. 국내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현황	51
1. 감독제도 및 법률체계	51
2. 보험상품과 보험업	54
3. 은행상품과 은행업	60
4.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63
IV.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	72
1. 법률체계 측면	72
2. 금융상품과 금융업에 대한 정의측면	75
3. 주요이슈를 통해 본 문제점	81
V. 해외사례	98

1. 미국	98
2. 영국	109
3. 일본	114
4. 호주	120
VI. 보험상품 정의 및 분류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130
1. 금융상품의 법률체계 개선	130
2.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신설	133
3. 열거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및 연금관련 규정	137
4. 보험상품 정의관련 보완장치 마련	142
5. 보험회사 투자성 금융상품 취급 확대	145
6. 보증관련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규제 명료화	148
참고문헌	151

<표 차례>

<표Ⅲ-1>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 및 구분	55
<표Ⅲ-2>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정의 및 구분	57
<표Ⅲ-3> 보험업의 업무범위 현황	59
<표Ⅲ-4> 은행업의 업무범위 현황	62
<표Ⅲ-5>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증권외 예시	67
<표Ⅲ-6> 자본시장통합법의 파생상품	68
<표Ⅲ-7>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모습	71
<표Ⅳ-1> 유사금융기관의 은행법 및 보험업법 적용 현황	75
<표Ⅳ-2> 금융업별 경영 및 부수업무 법령규정 현황	79
<표Ⅳ-3> 변액보험의 종류 및 내용 비교	83
<표Ⅳ-4> 투자성 보험·예금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규정	84
<표Ⅳ-5> 자본시장통합법 전후의 장외파생상품 정의 비교	85
<표Ⅳ-6> 금융회사별 장외파생상품의 취급범위	88
<표Ⅳ-7> 미국의 날씨보험 및 날씨파생상품 상품구조 비교	89
<표Ⅳ-8> 세제적격개인연금 취급기관별 상품 비교	95
<표Ⅳ-9>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비교	97
<표Ⅴ-1> 뉴욕주 보험법의 세부 보험상품 분류	99
<표Ⅴ-2> 캘리포니아주 보험의 분류	101
<표Ⅴ-3> 미국 예금보험공사법에서 예금의 정의	104
<표Ⅴ-4> 영국 규제대상행위령에서의 보험계약 분류	110
<표Ⅴ-5> FSA의 지침서의 신용의 개념	112
<표Ⅴ-6> 영국 금융업의 분류	114
<표Ⅴ-7> 일본의 생·손보 업무영역 구분	115

<표 V-8> 일본의 은행영업의 범위	117
<표 V-9> 일본 금융관련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류	119
<표 V-10> 호주 노령연금상품의 종류	125
<표 VI-1> 미국 뉴욕주의 보험계약 포괄적 정의	135
<표 VI-2> 현행 보험업법령에 열거된 보험상품 현황	139
<표 VI-3> 보험업법령에 추가 열거가 필요한 보험상품	141
<표 VI-4> 다른 법률에 의거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	142
<표 VI-5> 보험상품 정의에서 명시적 적용제외가 필요한 상품	143
<표 VI-6>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	145
<표 VI-7> 보험증권화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방안	148
<표 VI-8> 보증관련 금융상품 내용 비교	149

<그림 차례>

<그림 III-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전·후 금융상품의 범위	52
<그림 III-2>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65

요약

I. 서론

- 세계적인 금융경업화 추세와 그에 따른 국내외의 금융통합법을 제정 및 규제체계 재구축 노력이 진행 중에 있음.
 -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금융법률의 통합 추세
 - 국내에서도 부분통합금융법률인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대응적 개정이 필요한 시점
- 금융소비자 및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명확한 금융상품의 정의, 분류 및 규제체계가 필요
 - 모호한 금융상품의 정의로 인하여 규제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예금자보호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유자격자에 의한 판매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 규제대상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무면허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는 사업자가 생길 수도 있음.
- 따라서, 부분통합금융법률체계하에서의 보험상품 정의와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
 - 국내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요외국의 금융법률 통합사례와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살펴본 후,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체계를 보험업법에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II.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필요성과 방법

1.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필요성

- 금융겸업화 및 금융법률의 통합 추세와 국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금융겸업화로 다른 영역의 업무 취급으로 인한 규제차익과 소비자보호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최근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보험 및 은행상품 등의 경우 이중규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방법

-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및 절충형인 한정적 열거주의로 구분할 수 있음.
 - 열거주의는 해당금융상품을 그 형태에 따라 예금, 유가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
 - 포괄주의는 경제적 기능에 따라 개념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해당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
 - 한정적 열거주의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를 혼합하여 경제적 기능에 따른 포괄적 정의를 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금융상품 분류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방식
-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절대적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
 - 기존 국내 금융법률의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체계는 열거주의를 채택

했으나 최근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하여 포괄적 정의와 예시적 열거를 병행하는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을 도입하였음.

- 해외사례에서도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를 위하여 열거주의 또는 포괄주의 또는 한정적 열거주의 등이 사용되고 있음.

3.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와 금융업의 관계

- 금융업이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보유·관리하고 금융상품에서 정한 계약관계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금융겸업화 진전으로 업무와 상품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음.
-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범위 뿐 아니라 보험업의 경영·부수업무를 통하여 취급하는 다른 금융상품 존재도 확인해야 함.
- 물론 다른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금융업별 업무범위 조사와 금융겸업화로 허용된 다른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

4. 보험상품 정의에 대한 기존 연구

□ 국내 연구

- 양승규(2005)는 법적인 관점에서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과 보험계약을 시도
- 조해균(2000)은 보험경영적 관점에서는 보험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접근으로 경제생활에서 보험유사시설과 보험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 후 보험에 대한 정의를 시도
- 이경룡(2004)은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보험을 정의

□ 외국 연구

- 경제이론적 접근방법의 주장으로 Allan Willett(1951), Robert Mehr & Robert Osier(1949), Klup(1952), Irving Pfeffer(1956) 등의 기존연구가 있음.
- 법률적 정의를 시도한 학자로는 Keeton & Widiss(1988), Eric Holmes & Mark Rhodes(1996), Porat(1999) 등이 있음.

III. 국내 금융상품의 정의 및 규제 현황

1. 감독제도 및 법률체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전의 감독 및 법률체계

-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개별업법에서 규제대상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열거주의로 규제

□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주의 규제체계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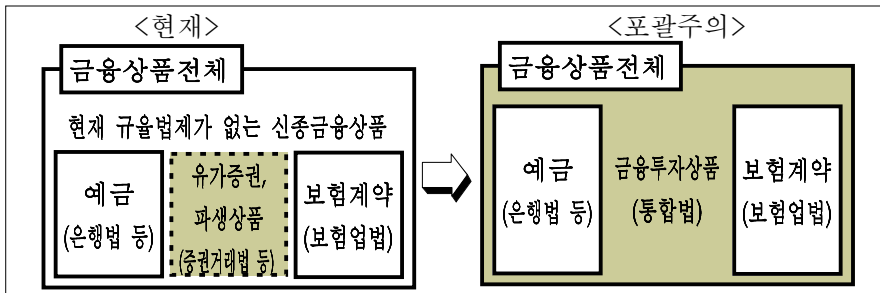
- 기존 열거주의 규제체계의 문제점 개선
 - 첫째, 기존 열거주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취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혁신을 어렵게 하고,
 - 둘째,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법령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곤란하며,
 - 셋째,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열거한 후 취급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또한, 경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통한 규제차익 차단이 필요
 -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여 금융상품의 규제차익 기회를 차단

□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주의로 인한 영향

- 첫째, 금융투자상품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 및 예금은 열거주의로 정의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향후 출현하는 중첩성의 신종금융상품이 우선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전·후 금융상품의 범위>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재경부, 2006.6

- 둘째, 부분통합금융법체계인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에서 보험 및 은행상품을 적용배제하지 않아 다른 금융권역의 침해 또는 이중규제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어 대응적 검토가 필요

2. 보험상품과 보험업의 정의

□ 보험의 정의에 대한 기존 연구

- 이경룡(2004)은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
 - 즉, 보험이 리스크 전가를 한다고 해서 리스크를 전가하는 모든 방법이 보험에 속하는 것은 아님.
 -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은 개별적 리스크의 전가와 결합을 통하여 재무

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도”이며,

- 보험의 기본정신을 상부상조로 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소수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손실분담을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하는 것”임.
- 법적 관점에서 “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전보(indemnity of financial loss)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고,
- 수리적 관점에서는 “보험은 확률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임.
- 4가지의 관점을 종합하면 “보험은 리스크의 감소, 손실의 분담, 손실의 전보 및 손실의 예측과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스크의 전가와 결합, 기금의 형성, 법적 계약 및 보험 수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임.
- 법률적 정의를 시도한 학자로는 Keeton & Widiss(1988)가 “모든 보험계약은 위험이전에 관한 것이지만 위험이전을 포함하는 모든 계약이 보험은 아니다(all insurance contract concern risk transference, but not all contracts involving risk transference are insurance)”라고 주장함으로써 리스크이전기능을 보험상품의 핵심기능으로 정의

□ 보험상품의 정의

-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적 정의는 없으나, 상법 제638조에서 보험계약을 정의하고 있음.
 - 보험계약은“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법률인 보험업법에 포괄적인 보험상품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성은

- 보험상품의 정의를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의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대응하여 중첩성 보험상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¹⁾에서 언급했듯이 보험회사 및 은행이 공정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및 규제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
- 보험회사가 실제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업무를 포괄하는 보험상품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보험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적용으로 보험회사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보험업의 정의

- 보험업 제2조에서 보험업이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영업무 및 부수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타 금융업무에는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 ③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가 있음.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는 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또는 ② 보험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이 있음.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보고」, 2007. 2. p.25.

3. 은행상품과 은행업

□ 은행상품의 정의

- 은행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포괄적 정의를 은행법에서도 두고 있지는 않음.
-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대표적 수신상품인 예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 은행법은 은행여신에 대해서도 개념적 정의는 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신용공여의 범위를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 불능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와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은행업의 정의

- 은행업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은행법 제2조)
- 은행업무의 범위는 “이 법과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업무”로 규정(은행법 제27조 및 제28조)
 - 은행업무는 ①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②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 내·외국환 업무이외에도 ④ 다른 은행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있음.
 - 은행경영업무는 ① 신탁업무, ② 신용카드업무, ③ 기타 은행업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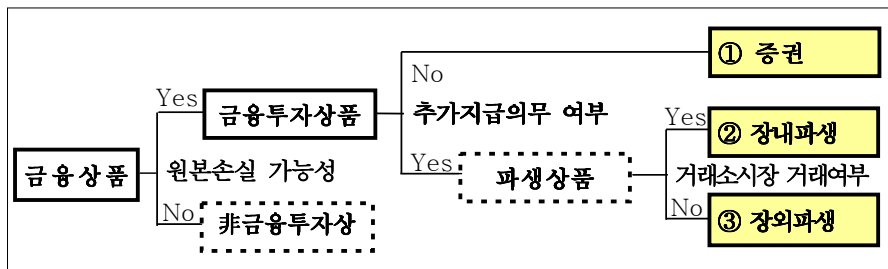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이 있음.

4.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적 정의로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
- 금융투자상품의 명시적 적용제외 대상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단기상품으로 가치변동 미미)
 -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관리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퇴직연금신탁의 제외)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분류체계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재경부, 2006.6.30

□ 금융투자업의 정의

- 자본시장통합법 제6조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정의
 -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구분
-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 신탁업은 보험회사 경영업무로 기허용
 - 보험회사에 허용하는 집합투자업의 범위를 변액보험으로 제한하고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규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

IV.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

1. 법률체계 측면

□ 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 외국사례에서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부분통합금융법률에서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다만, 영국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생명보험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분통합금융법 체계로 일단 전환했으나, 금융상품 분류 및 규제적용상의 문제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함으로써 통합금융법률로 신속히 전환한 바 있음.
- 부분통합금융법이면서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열거대상 금융상품을 명백하게 적용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정적 열거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금융투자상품의 한정적 열거주의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 보험업법에 열거된 보험상품이라도 투자성이 있으면 여전히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
- 보험상품의 대표적 속성이 위험이전이지만 위험이전기능을 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험상품이 아닌 것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분류기준으로 제시한 투자성은 금융투자상품의 대표적 속성일 뿐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님.

□ 유사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 유사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정의에 따라 광범위하나 우체국금융·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조직과 새마을금고에 의한 금융·보험업만을 대상으로 검토
-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유사금융기관은 은행법을 적용
 - 이에 반하여 유사금융기관의 실질적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유사금융기관의 은행법 및 보험업법 적용 현황>

구분	은행법 적용여부	보험업법 적용여부
우체국금융업무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농협금융업무*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 배제 (제12조제1항)
수협금융업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 제 (제12조)
신협금융업무 (신용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임(제6조제3항)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 용배제 (제6조제1항)
새마을금고금융업무 (새마을금고법)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 기관임(제6조제1항)	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 제 (제6조제2항)

주 : * 은행법에서도 금융기관으로 인정(은행법 제5조)

2. 금융상품과 금융업에 대한 정의측면

□ 금융상품 정의 체계의 불일치

- 금융투자상품은 포괄적 정의와 구체적 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
의인 데 반해, 보험과 은행은 열거주의
 - 따라서 중첩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열거 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분류체계상 중첩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품분류에서의 중첩성
상품에 대한 분쟁해결 또는 조정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

□ 금융업 정의의 한계

- 보험회사,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과 업무를 단일
또는 소수의 특성에 근거한 통일된 법률적 기준으로 구분하기란 한계
가 있음.

- 은행업은 제한적 자금중개기능(예금 수입 등의 조달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은 목적과 기능(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등)을 기준으로, 보험업은 위험보장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경영·부수업무의 규정 및 범위의 불균형
 - 경영 및 부수업무는 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부수업무는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부수업무를 정하는 보험업보다는 완화된 체계임.
 - 자본시장통합법 제40조 제1호에서 금융투자업의 경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은행은 부수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과 파생상품거래의 취급을 경영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규정하는 점 등은 체계적 일관성도 없는 경우에 해당

3. 주요이슈를 통해 본 문제점

□ 투자성 금융상품의 분류

-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성을 기준으로 분류함에 따라 원본 일부보장형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
 -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에서 정할 원본과 회수금의 범위 결정에 따라 유동적
- 일부 변액보험의 금융투자상품화에 따른 규제차익 차단은 보험업법 내에서도 해결 가능
 - 실질적으로 보험업법에 투자성이 있는 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정도만 추가 준용하는 방법으로 가능

□ 장외파생상품과 보험상품

- 파생상품과 보험상품은 상품구조는 다르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기능이 유사할 수 있음.
 -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고 보험은 손해의 보상(위험의 회피)이 목적이고 파생상품은 위험의 회피 목적외에 투기적 목적도 가능
- 파생상품의 범위와 취급기관
 - 자본시장통합법이전 파생상품의 범위에서는 날씨 등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기초자산을 날씨 등 자연적 현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증권회사도 장외파생상품을 경영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은 부수업무로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다만, 은행의 일반상품파생 취급은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허용
 - 보험회사는 유사성격에도 불구하고 취급 불가 일본은 부수업무로 취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날씨파생과 보험상품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에 있음.

□ 채무면제·유예계약(DCDS)과 보험상품

-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면에서는 채무면제·유예계약(DCDS)계약과 보험상품은 유사한 성격
 - 다만, DCDS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에 대하여 사망, 재해 사망, 신체 상실, 장애, 실업, 가사 휴직, 경조사, 입원, 병역, 자연 재해 등의 일정한 사건(protected event)이 발생하면 채무상환을 면제 또는 유예해 주기로 차입자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간의 약정
 - 반면 보험계약은 독립계약으로 보험회사와 채무자인 계약자간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임.
 - 미국의 논쟁사례에서도 DCDS의 신용보험 성격에 대한 보험감독당국

의 해석은 확고하나, 감독측면에서 은행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측면의 장치 마련을 전제로 보험감독 면제는 가능

□ 연금 및 투자상품

- 전통적으로 연금은 생존보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포함), 은행, 자산운용회사, 간접투자회사, 우체국, 농협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형태의 연금도 존재하고 있음.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축,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계약,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퇴직연금 등
- 세제적격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적 해석과 상관없는 금융상품 분류와 취급기관 선정이 일반적

V. 해외사례

1. 미국

□ 보험상품의 정의

- 뉴욕주 보험법 제1101조에서는 보험계약을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합의 또는 기타 거래”로 정의
-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중 일 당사자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벗어나거나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에서의 발생 또는 발생

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 담보, 보증 및 신용보증계약은 담보자, 보증자 또는 신용보증자가 보험자이거나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만 보험사업으로 간주된다고 규정
- 허가 대상이 되는 30여개의 세부보험계약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포괄적 정의에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포함하고 있음.

□ 보험업의 정의

- 보험업의 영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말함.
 - (A) 보험자로서, 본주내 거주자 혹은 본주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개인,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한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서의 발행 또는 교부 및 그와 같은 보험증권 혹은 보험계약의 신청 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의 신청을 행할 것,
 - (B) 보증인이, 적절한 업무 또는 활동의 단순한 부대 업무로서가 아닌, 본업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체결의 신청하는 것,
 - (C)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회비(membership fee), 부과금(assessment) 또는 기타의 대가를 징수하는 것,
 - (D) 재보험업무를 포함하여 보험업의 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보험종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
 - (E) 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상기의 어느 것에 상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또는 그 기획하는 것 등을 행하는 것이 보험업에 해당
- 보험업의 부수업무로 보험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투자관리업무(investment management service)와 감독당국의 허가업무의 영위 가능
- 뉴욕주 보험법 제3222조에 의하여 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자에 허

용한 기금적립협정(funding agreement)업무란 보험계약의 정의와 관계없이 기금적립협정의 체결 또는 교부를 보험업(doing an insurance business)으로 간주

- 연금은 보험계약의 포괄적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열거된 보험종목 중 하나의 영위도 보험업 영위로 인정하고 연금을 보험종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연금의 취급’은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

□ 은행상품 및 은행업의 정의

-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가 열거되어 있으나, 연방최고법원에서는 연방은행법에 의해 규제되는 은행의 예금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미국 은행업의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연방법에 열거된 국법은행(national banks) 업무의 범위에 명시
 - 국법은행의 업무는 어음 등의 채무증서의 할인, 예금의 수취, 통화 등에 대한 교환 및 매매, 대출, 제한된 범위의 채권업무 등을 열거

□ 증권상품 및 증권업의 정의

- 1933년 증권법에 있어서 ‘증권’의 정의
 - 열거주의로 노트, 주식, 자기주식(treasury stock), 증권선물(security future), 담보부사채(bond), 무담보부사채(debenture),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양도가능지분 등을 포함.
 - 1946년 Howey 판례에서는 증권법이 의미하는 투자계약을 “공동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는 계약”으로 판시

2. 영국

□ 통합금융법 체계 구축

- 2000년에 성립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근거하여 보험,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원적으로 감독하는 체계적인 규제시스템을 정립

-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 ‘투자물(Investment of a specified kind)’로 금융상품을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물’은 모든 자산, 경제적 권리, 이익권리 등을 통칭하는 개념
 - 재무부령(Treasury Order)에서 ‘투자물’을 보험계약, 예금, 집단투자계획, 선물, 차액거래(contracts for differences) 등으로 열거

□ 보험상품의 정의

- FSMA의 부속 법령인 RAO(regulated activities order)에서는 보험계약이란 장기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과 다음의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RAO Part 1)
 - 은행등이 행하는 것이 아닌 보증
 - 톤틴(tontin)식 연금제도
 - 은행이 아닌 자가 체결 및 실행하는 자본보상계약이나 연금기금관리계약
 - 인간생명에 대한 연금을 지불하기 위한 계약
 - 단체보험계약(collective insurance)
 - 사회보험계약 등
- 일반보험계약에는 상해, 질병, 육상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우송중인 화물, 화재 및 자연재해, 자산 손해,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항공기 손해배상책임, 선박 손해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 신용, 보증, 기타 금전 손실, 소송비용, assistance 등을 열거
- 장기보험계약에는 연금, Tontine연금, 자금상환계약, **연금기금운영**, 단체보험, **사회보험**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은행상품의 정의

-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규제대상행위령(RAO)에서 규제대상 금융상품

으로서 예금(deposit)을 정의하고 있으나, 대출에 대한 정의는 없음.

- 예금의 정의

- 이자나 프리미엄의 존재여부, 요구불예금인지 정기에금인지의 여부, 예금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에게 상환(repaid)될 것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이러한 예금이 재화, 서비스, 담보제공을 이유로 지급된 금전이어서는 안 됨.

□ 금융업의 정의

- 영국의 금융업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는 완전한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은 FSA의 감독을 받아야 함.
- 감독기구의 인가대상 금융업의 종류는 투자물 중개업, 투자물 자기매매업, 투자물 거래주선업, 투자물 보관 및 관리업, 집합투자기구 관련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의 투자업무와 예금수취업 및 보험업(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구분

3. 일본

□ 보험상품 및 보험업의 정의

- 보험상품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법에서 찾을 수 있음.
- 보험계약이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정의
- 보험업의 정의
- 보험업이란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일정한 우연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

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또는 기타의 보험의 인수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

- 보증증권업무를 보험업으로 간주하는 추가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업법 제98조에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① 다른 보험회사 및 다른 금융업자의 업무의 대리 및 대행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자의 대출업무의 대행, ②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보증채 등의 인수업무, ③ 유가증권 사모의 취급, 금융선물거래 및 금융선물거래 등의 수탁 및 금융 등 파생거래, 금융 등 파생거래의 매개, 취급 또는 대리업무 등과 제99조에서 보험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인수를 행하는 업무도 가능

□ 은행상품 및 은행업의 정의

- 일본의 은행법에서는 예금에 대한 정의를 ‘정기적금’과 ‘정기적금 등’의 두 가지에 형태로 나누어 정의
 - 정기적금이란 “기한을 정해 일정 금액의 급부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고, 정기 또는 일정한 기간에 몇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는 금전”
 - 정기적금등이란 “정기적금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중도 또는 만료시에 일정한 금액의 급부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받는 부금”으로 정의
- 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은행이라고 정의
 - 은행업이란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취급과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외환거래의 영위”를 의미

□ 증권상품 및 증권업의 정의

-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24항에 의하면 유가증권, 예금계약에 근거하는 채권 그 외의 권리 또는 해당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혹은 증서로 법령으로 정한 것, 통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상품거래소법 제2조 제4

항에서 규정하는 상품을 제외),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 거래소가 시장 파생상품거래를 원활화하기 위해 이율·상환기한 이외의 조건을 표준화 하여 설정한 표준물 등을 열거

-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가격·이율은 물론 기상의 관측에 따른 수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내지 사회경제의 상황에 관한 통계의 수치로 산출되는 파생상품에까지 확대

4. 호주

□ 통합금융법률 체계의 구축

- 호주의 금융관련법의 통합과정은 1996년 재무성의 주도로 금융시스템 조사위원회(Financial System Inquiry, FSI)가 결성된 후 5년여의 과정을 거쳐 성립
-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FSRA)이 2001년 9월 의회를 통과하여 2002년 3월부터 시행

□ 금융상품의 정의

- 금융상품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상품을 통하여 또는 해당상품의 인수를 통하여 투자(making a financial investment), 위험관리(managing financial risk) 또는 비현금지급(making non-cash payments) 중 하나 이상을 하는 것을 금융상품이라 정의
- 일반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 열거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명시적 포함조항(specific inclusion)과
- 일반적 정의와 명시적 포함에 해당하지만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규정(specific exclusion)을 두고 있음.

□ 보험상품의 정의

- FSRA는 보험상품으로 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생명보험(investment life insurance product)을 열거
 - 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생명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의 일부가 보통의 보험의 방법과 다르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과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관련된 보험의 규정을 포함한 계약을 보험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음.
 -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업법에서 인정된 생명보험증권(life policy)이나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이 아닌 보험계약을 의미하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법에서 인정된 생명보험증권이나 감채기금증권을 의미. 투자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이 아닌 생명보험증권이나 감채기금증권 등을 말함.

□ 보험업의 정의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규제법률이 별도로 존재
 - 보험법(insurance act 1973)은 보험업을 “보험(재보험 포함)의 방법으로 특정사건의 발생과 관련한 어떤 손해 또는 손상(손상 또는 보상을 지급할 책임을 포함한다)과 관련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과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
 -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에서 생명보험업(life insurance business)이란 ① 생명보험증권의 발행, ② 감채기금증권의 발행, ③ 생명보험증권에서의 책임에 대한 인수, ④ 감채기금증권에서의 책임에 대한 인수와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중 일부 또는 모두로 구성
 - 보험부수업무에 대한 의심을 회피하거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보험본업과 관련된 업무는 법정펀드의 자산을 투자, 관리하는 것과 연관된 업무도 포함함.

□ 은행상품과 은행업의 정의

- 예금은 은행법(Banking Act)을 충족하는 공인예금수취기관(ADI : 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e)에 의한 예금(deposit-taking facility)을 의미
- 은행업이란 “헌법(Constitution)에서 설명하는 은행업 또는 헌법을 적용 받는 회사가 운영하는 업 그리고 일정범위에 있어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본 정의의 취지에 맞게 법에서 정한 다른 금융행위를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업”을 의미

□ 증권상품 및 증권업의 정의

-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에 의하면 증권이란 “주식·채권·주식과 채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 또는 이익 및 증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을 의미
 - 투자상품(managed investment product)도 증권에 포함되며 “등록된 투자관리기관을 통한 이익, 법적 혹은 그와 동등한 권리 또는 이익·앞의 이익 또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옵션과 회사법(Corporation Act)601ED(1)요건의 하나 이상을 충족한, 미등록 투자관리기관을 통한 이익·법적 혹은 그와 동등한 권리 또는 이익·앞의 이익 또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을 의미

VI. 보험상품 정의 및 분류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1. 금융상품의 법률체계 개선

□ 금융상품 정의체계의 통일화

- 금융투자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에 대응한 보험 및 은행상품의 열거주의에서 한정적 열거주의로의 전환
 - 향후 중점성 신상품 출현시 불합리한 분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일 선상에서 금융상품 분류가 가능하도록 전환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완전통합금융법을 체계로 전환하여 완전한 포괄주의로 정의하는 경우 규제차익은 효과적으로 차단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내에서는 단일기준으로써 충분할 수 있으나, 모든 금융상품을 투자성기준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
- 금융상품 분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규제당국의 균형 있는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분류를 관장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보험상품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해서도 유사금융기관의 보험업무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배제조항은 철폐되어야 할 것임.
-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신설을 계기로 보험계약법의 상당부분을 보험업법에 통합하여 탄력적이고 일관된 보험규제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음.

2.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신설

□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신설 필요성

- 규제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규제공백 제거 및 소비자 보호가 가능
- 보험회사의 업무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부수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필요

□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신설방안

-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는 '위험이전' 요소만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안(제1안)과 투기적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손해보상성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제2안)을 제안

< 제 1 안 > - 위험이전 요소만 반영

“보험상품이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수수할 권리를 말한다.”

< 제 2 안 > - 위험이전 요소에 손해보상성 개념을 포함

“보험상품이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그 사고시점에서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불리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수수할 권리를 말한다.”

◦ (제1안)과 (제2안)의 장단점 비교

- <제1안>은 폭넓은 개념으로 보험상품을 정의함에 따라 연금 및 파생상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보험상품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논란영역도 확대될 수 있음.
- <제2안>의 경우 국제적 사례에 부합하도록 연금을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서 구분할 수 있으나, 현행 상법상 보험계약의 범위보다 보험상품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리한 이해관계’의 해석에 대한 논란도 우려

◦ 보험상품 정의에 대한 부연적 설명규정

- “불확정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연한 사고’와 동일한 개념으로 양 당사자중 일방의 지배를 벗어나서 발생했거나 발생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서 객관적 우연성이 아니라 주관적 우연성임을 규정
-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금액과 물품 및 서비스 등 기타 급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추가 규정의 필요성은 없으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세부적 보험종류에 대한 정의에서는 물품 및 서비스급부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규정이 필요
-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른 보증과 구분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거래방식의 보험거래이고 보증주체가 보험회사인 것을 보증보험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

3. 열거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 현행 열거된 연금상품의 범위 및 정의와 규제

- 현행 기준으로 보면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는 ‘불확정한 사고 발생시 일정한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손해보상성은 언급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보험업의 취급상품으로 연금을 열거하고 있어 추가 규정의 필요성은 없음.
- 신설될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연금상품의 포함여부에 따라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금취급이 보험업 영위에 해당한다는 별도의 추가 규정 마련이 필요
 - 미국은 연금을 일정기간의 정기적 지급(periodical payment)을 하는 모든 계약 또는 인명의 존속에 따라 일련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어떤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속 지급하는 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연금취급이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보험업 정의에서도 반영하고 있음.

□ 열거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필요성

- 다른 금융상품과 기능 또는 계약성격 등이 유사한 중첩성 보험상품의 범위 및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도움

<보험업법령에 추가 열거가 필요한 보험상품>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생명보험	신용생명보험	신용공여자 또는 상품공급업자가 본업으로 제공한 상품 또는 대출 등 서비스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생명보험 담보사고에 한함)	신용파생 및 DCDS와의 혼란방지
손해보험 제3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공여자 또는 상품공급업자가 본업으로 제공한 상품 또는 대출 등 서비스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생명보험 담보사고에 한함)	신용파생 및 DCDS와의 혼란방지
	날씨보험	비우호적인(adverse) 날씨에 기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날씨파생과의 혼란 방지
	법률서비스보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서비스 비용의 상환을 제공하는 보험	보험사고의 구분이 어려워 생손보사 모두 취급

주 : * 미국은 생명·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

□ 보험상품 정의와 무관한 보험상품의 열거

-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고 있는 세제적격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의 정의와 무관하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이므로 추가 열거

4. 보험상품 정의관련 보완장치 마련

□ 보험상품 정의에 포함되지만 명시적 제외

- 유사보험을 명시적 제외에 포함한다는 것은 현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해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 우체국보험은 오히려 시급히 보험업법을 적용하여야 함.

<보험상품 정의에 포함되지만 명시적 적용제외가 필요한 상품>

구 분	해당상품명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유사보험	법률근거가 있는 공제기관	불특정 다수대상 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조합원 대상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또는 조합원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제한
	법률근거가 없는 소형공제기관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조합원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제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
	국가	우체국 보험	생명보험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사회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강제공영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업법 규율대상이 아님
일반기업의 복지플랜 (①,③)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복지플랜의 담보내용중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지급, 재산손해 보상, 상해 및 질병보상 등	보험담보는 복지플랜금부중 일부이고 1기업내로 제한	
기타 서비스계약 운영주체 등 (①,③)	의료서비스계약	의료기관 등의 우연한 사고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계약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 서비스급부의 제공이지만, 본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	
	Warranty계약	일반기업의 품질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수리서비스 제공계약		
	Waiver계약	렌트차량의 손상 및 도난에 대한 구상포기 등 권리포기계약		

□ 보험상품이 아니거나 명시적 제외 대상이지만 일부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사업자에 대한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캡티브 보험자	보험상품 제한없음	- 리스크이전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정의하였으나, - 캡티브는 리스크이전은 없지만 실질적 계열내 또는 동업자내 자회사 또는 회원을 상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리스크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험상품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국은 캡티브보험사 설립을 보험업법에서 규제
Viatical Settlement	Viatical Settlement	- 2년내 사망예정 자의 사망보험계약 유동화 또는 - 노령의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유동화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유동화이지 보험은 아니지만 미국은 보험업법에서 규제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비용 보상	- 비영리법인법 또는 협동조합 법인법에 의거, 설립한 법인이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의료비용 보상, 초과비용 보상 등을 제공	명시적으로 보험상품에서 제외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음(미국)
종업원 복지기금	상해·연금	- 보험 또는 연금 계약의 구입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 기업의 복지를 위해 - 직접 또는 수탁자를 통해서 1명 또는 복수의 고용주가 한 개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설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기금	상동

□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무

- 현재 다른 금융업무 중 보험회사 본체경영을 허용한 업무로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등이 허용
- 논란이 되고 있는 날씨파생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발행·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는 것이 필요

5. 보험회사 투자성 금융상품 취급 확대

□ 보험회사의 투자업무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무는 보험회사 일련의 보험사업 수행중 발생하는 보험 본래의 업무로 발전하여 왔으며,
 - 투자능력면에서도 다양한 자산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집단투자능력이 충분
 -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투자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있어 투자업무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

□ 보험회사의 투자기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분야

- 미국의 경우 투자관리업무의 경영업무 허용 외에도 기금적립협정을 통한 다양한 투자업무 허용 사례를 참고할 필요
 - 기금적립협정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기금관리업무 뿐 아니라 보험회사 이외의 개인 법인을 위한 기금관리업무 및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금융중개기능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투자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허용한 기금적립협정은 연기금관리대행 뿐 아니라 보험증권화를 위한 기금적립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음.
- 유럽에서도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Capital Redemption, Capitalisation 등 투자성보험과 톤틴과 같이 과거 국가재정 마련에 이용했던 보험상품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 호주의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 투자계좌계약(investment account contract), 투자연계계약(investment linked contract) 등 사망 또는 생존과는 상관없는 투자성 상품이지만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음.

- 자본시장 발달로 2000년 이후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증권화 제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을 통한 보험자본 조달기능 및 보험리스크의 자본시장으로의 중개기능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선진금융기법도 도입할 필요

6. 보증관련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규제 명료화

□ 보증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의 종류

<보증관련 금융상품 종류 및 내용 비교>

구분	사고성격	계약당사자	수익자	계약성격
지급보증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은행등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DCDS	사망, 화재 등 보험사고에 따른 대출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카드회사	카드 회사	부대계약
CDS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사건의 발생	보장매입자 (=채권자)와 보장매도자	채권자	자기를 위한 계약
신용생명·손해보험	사망, 화재 등 보험사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보험회사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보증보험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보험회사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보증보험사의 신용보험	상품매매계약 등의 채무불이행	채권자와 보험회사	채권자	자기를 위한 계약

□ 보증관련 금융상품의 분류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반영 내용

○ 은행등의 지급보증과 보증보험

- 기능적 구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증보험을 계약방식을 보험으로 하고 보증인이 보험회사가 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보증보험의 취급은 보험업 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신용파생상품과 신용보험

-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과 CDS는 사고성격, 계약당사자, 수익자 및 계약성격 등이 명확히 구분되나, 보증보험사가 취급하는 신용보험(상업채권에 대한 상업신용보험, 대출 등 채무채권에 대한 재정신용보험)은 CDS와 유사하므로 CDS를 보증보험사 취급의 신용보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를 해주고,
- CDS가 구분 가능한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므로 우연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을 보장하는 CDS는 보험상품의 영역으로 정의

○ DCDS와 신용생명·손해보험

- DCDS와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므로 보험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규제실익에 대해서는 미국의 논쟁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1. 서론

1. 연구목적

금융환경의 다변화로 인하여 금융업권간 경계에 대한 의미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으며 무한 경쟁구도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법제 및 조직의 변화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관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의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 금융법률의 통합 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IMF이후 나타난 금융소비자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보험 및 은행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으며,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본시장발전이 요구되어 자본시장통합법²⁾이 제정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완전한 통합법률의 형태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겸업화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금융법률의 통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과 은행을 제외한 자본시장관련 금융업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통합 금융법률의 체계를 가졌다. 그러나 업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보험과 은행을 제외한 부분통합법률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보험과 은행상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적용제외를 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보험과 은행상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업규제대상과 상품규제대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필요한 조치였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제도의 변화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을 말한다. 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

더불어 금융상품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사전적 예측성에 의한 기존 금융상품의 열거주의 분류체계로는 신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추가 열거해야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또한 동일기능의 금융상품을 서로 다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제차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금융상품의 분류 및 규제체계를 포괄주의와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행 금융산업에서의 겸업화·통합화 추세에 대응하는 부분통합금융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국내 금융법률의 규제대상을 결정하는 해당 금융상품의 정의와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요외국의 금융법률 통합사례와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살펴본 후, 합리적인 보험상품³⁾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금융상품의 정의 및 규제에 관한 국내외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국내의 금융관련 법규제의 전체적인 체계와 변화 추이 속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법률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각 금융권의 영향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투자상품의 제정의 의미와 이를 통한 보험, 은행, 증권업의 상호 복합 관계에 대한 의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를 위하여 금융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외국이 금융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국내 금융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정의 및 해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상

3)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이나 해외법률에서 '보험계약 또는 insurance contract'로 정의하고 있으나, 보험계약법의 보험계약과는 차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상품'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품에 대한 정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금융상품을 정의하기 위하여 금융업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금융업권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례연구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I 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 II 장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존에 실시된 기존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국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보험관련 법령 뿐 아니라 은행법령에서의 은행상품 및 은행업의 정의 및 규제체계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규제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IV 장에서는 현행 금융상품 정의 및 업무범위와 규제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주요이슈를 통하여 논란의 핵심주제 또는 금융상품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하였다. 제 V 장에서 주요외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금융기관별 업무범위에 대한 분류 및 규제체계에 대하여 조사하고 금융법률의 통합에 대한 진전 현황도 조사하였다. 제 VI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금융상품의 정의와 규제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와 보험상품의 정의 및 업무범위 등의 규제체계를 보험업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필요성과 방법

1.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필요성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금융겸업화 및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차익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금융회사의 효율성 문제 등과 관련된다.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금융회사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편의 및 거래비용 감소 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겸업화 및 그에 따른 금융법률의 통합 추세와 국내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에 대하여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금융겸업화에 따른 다른 영역의 업무 취급으로 인하여 부정적 측면도 있다. 즉, 기능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서로 다른 규제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상품규제를 받고 있어 사전적 소비자보호기능이 작동할 수 있고 해당금융상품이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신설하여 동일한 기능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른 권역의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은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 및 은행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도 해당업법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의 부당한 확대가 금융투자업의 부당한 업무영역 확대와 다른 금융업의 축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겸업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금융겸업화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금융법률의 통합측면에서 국내 부분금융통합법률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보험업법 중심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 방법

금융통합법률은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금융통합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이 2000년에 제정되었고,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도 2001년에 제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부분통합법률로 추진하였던 ‘투자서비스법’에서는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를 ‘상환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높은 경제적 효용을 기대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금, 적금, 보험, 공제, 무진업(無盡業)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도 하였으나, 보험업계의 반발과 무등록영업행위 제재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본 내각법제국의 지적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기존대로 열거주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보험과 예·적금에 대해서는 개별법(보험업법등)에 준용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런 금융법률의 통합과정에서 핵심적 논제로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금융법률에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고 보험, 은행, 투자 등 세분 금융상품의 경계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및 절충형인 한정적 열거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열거주의는 해당금융상품을 그 형태에 따라 예금, 유가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포괄주의는 경제적 기능에 따라 개념적으로 정의하여 해당금융상품을 구분하는 것으로써 경제적으로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자성을 기준으로 투자상품을 분류하는 경우 보험상품이든 예금상품이든 투자성이 있으면 모두 투자상품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한정적 열거주의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를 혼합하여 경제적 기능에 따른 포괄적 정의를 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금

4) 「주간금융재정사정」, 평성18년 1월 30일호, p. 20.

금융상품 분류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기존 국내 금융법률의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체계는 포괄적 정의 없이 해당법률의 규제대상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런 열거주의는 전업주의와 실질적 감독주의하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보험상품이고 은행이 취급하면 은행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취급금융회사 및 해당금융업이 해당금융상품과 일치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금융겸업화와 규제완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은행상품의 성격과 투자상품의 성격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고 투자회사의 파생상품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보험성격의 파생상품도 취급하게 되자 기능별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기능별 규제를 위하여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해외사례에서도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를 열거주의 또는 포괄주의 또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시장통합법에서는 전체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두고 있으나, 보험, 은행, 투자 등의 세부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두지 않고 해당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포괄주의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절대적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기능별 규제를 위해서는 포괄주의가 필요하고 기관별 규제는 열거주의로 충분하며 시장자율기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한정적 열거주의가 적합할 수 있다. 실증적 분석에 근거하기 보다는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3.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와 금융업의 관계

금융업이란 기본적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보유 및 관리하고 금융상품에서 정한 계약관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상품

은 금융업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금융겸업화 측면에서는 업무와 상품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보험의 성격을 가진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금융상품으로서 장외파생상품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일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본체경영이 허용되어야 하고 경영이 허용되면 보험회사는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취급금융상품의 범위와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에 대한 경영·부수업무의 범위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의 경영·부수업무 허용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본래 해당금융상품의 규제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나, 금융회사들의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업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금융회사들의 겸업화로 허용되어야 할 다른 권역의 금융상품을 범위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보험상품 정의에 대한 기존 연구

보험학자들의 보험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랜 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 지배적 학설이나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태이다. 보험제도가 해상보험에서 시작하여 다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범위를 넓혀왔고 학자마다 인식이 다를 뿐 아니라 나라마다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공통적 개념을 확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내에서도 학술적 관점에 따라 법적 정의, 보험경영 및 리스크관리차원의 정의로 그 인식과 접근방법에 따라 각각의 학설과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양승규(2005)는 법적인 관점에서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과 보험계약을 시도하였다⁵⁾. 보험법의 중심은 보험계약이므로 보험계약에 대한 다양한 학설에 대하여 ① 손해보상계약설은 보험제도가 발달한 초기에 손해보험 제도만이

5) 양승규, 『보험법』, 서울:삼지원, 2005.9., pp.76-81.

있던 시대의 보험계약에 관한 학설로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 부터 대가를 징수하고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징수하고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이라고 한다. 이설은 손해보험 계약에는 타당할는지 모르나, 생명 보험 계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수요충족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장래의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한다. 이설은 수요의 개념이 막연하고, 또 수요가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금액급여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상의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이 설은 매우 추상적인 설명으로 보험계약과 다른 급부계약과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기술설에 의하면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성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이설은 보험계약을 보험사업의 경영 방법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학설을 통하여 완전한 보험계약의 개념을 세울 수는 없으나, 보험계약법 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경제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거나 경제적·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따른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채권계약으로서 보험제도의 성질상 사법상의 전형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해균(2000)은 보험경영적 관점에서는 보험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접근으로 경제생활에서 보험유사시설과 보험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 후 보험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⁶⁾. 보험의 정의에 대한 학설에 대하여 비판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도박이론에 의하면 보험사업이 투기나 도박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6) 조해균, 『최신보험경영론』, 서울:박영사, 2000.2., pp.76-81.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거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기나 도박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② 보상계약이론에 의하면 “보험이란 당사자 한편이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보험을 단순한 당사자간 계약관계로만 보아 위험분산적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고 사회보험과 같이 국민과 국가간의 계약 체결없이 성립하거나 강제적 보험관계의 성립을 설명하지 못한다. ③ 손해분담이론에 의하면 “보험이란 한사람이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재산상 받은 불이익한 결과를 동일한 위험으로 위험을 느끼면서 실제로 아직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다수인에게 분할함으로써 생활의 위험을 제거 내지 경감하는 경제제도이다.”라고 하나, 이 이론은 자가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④ 욕구충족이론⁷⁾에 의하면 “보험이란 각 개인별로는 우발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금전적 욕구를 동일한 정도로 위험받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상호적으로 충족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여 보험대상과 보험보호의 운영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욕구충족이론에 중심을 두고 보험의 요건⁸⁾을 도출한 후 “보험이란 개인별로는 우발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측정가능한 금전적 욕구를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제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경룡(2004)은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보험을 정의하고 있다⁹⁾. 보험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각적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험이 리스크 전가를 한다고 해서 리스크를 전가하는 모든 방법이 보험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은 개별적 리스크의 전가와 결합¹⁰⁾을 통하여 재무적 손

7) Manes, Alfred, 『Versicherungswesen』, 1930, Bd. I, S. 2., 재인용.

8) 보험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은 우발적 욕구를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우발적 욕구) 둘째, 보험은 측정가능한 우발적 욕구를 보험대상으로 한다는 것(측정가능한 우발적 욕구) 셋째, 보험은 보험사고를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금전적 욕구의 충족) 넷째, 보험은 다수의 경제주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다수 경제주체의 존재)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자는 각기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공평한 비용의 부담)이다.

9) 이경룡, 『보험학원론』, 서울:영지문화사, 2004.1. pp.108-112.

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도”이며, 보험의 기본정신을 상부상조로 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소수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분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손실분담을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 “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전보(indemnity of financial loss)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고, 수리적 관점에서는 “보험은 확률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이라고 주장한다. 4가지의 관점을 종합하여 표현하면 “보험은 리스크의 감소, 손실의 분담, 손실의 전보 및 손실의 예측과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스크의 전가와 결합, 기금의 형성, 법적 계약 및 보험수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라고 결론짓고 있다.

미국에서의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학설과 보험 정의를 보면 첫째, 경제이론적 접근방법의 주장으로 Allan Willett(1951)는 “경제적 보험의 본질적 특징은 불확정 손해를 충족하는 자본의 축적이면서 리스크의 이전 및 결합이라고 주장”하고, Robert Mehr & Robert Osier(1949)는 대수의 법칙을 강조하여 “보험은 손해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험단위의 충분한 숫자를 결합함으로써 리스크 감소를 추구하는 사회적 도구”라고 주장하고 예측가능 손해는 위험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비례적으로 분담된다고 하였다. Klup(1952)는 보험수리적 접근으로 “보험은 보험비용이 보호기간 전 또는 후에 분담되느냐와 보험금부가 현금, 서비스 또는 재물로 지급되느냐에 따라 정의되고 협정방식으로 리스크와 위험에 대하여 평균화가 적용되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보험이 된다”고 하였으며, Irving Pfeffer(1956)는 “보험은 일당사자(피보험자)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도구로서 특정 리스크를 다른 당사자(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당한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적어도 부분적인 회복을 제공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주장하였다. 둘째, 법률적 정의를 시도한 학자로는 Keeton & Widiss(1988)가 “모든

10) 리스크 결합에 의하여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자가보험과 자체보험자(captive insurer)가 있다.

보험계약은 위험이전에 관한 것이지만 위험이전을 포함하는 모든 계약이 보험은 아니다(all insurance contract concern risk transference, but not all contracts involving risk transference are insurance).”고 하였으며, Eric Holmes & Mark Rhodes(1996)는 보험정의에 대한 기준으로 ① 우연성 및 본질적 관리 테스트(control test)에서 피보험이익, 손실위험, 리스크의 인수, 손실분배를 위한 총체적 계획, 리스크 인수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의 납부 등을 고려하고, ② 원론적 목적과 목적 테스트에서 “우연한 담보사건에 대한 리스크 이전과 분배의 요소들이 상업적 거래의 핵심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징인가?”와 “우연한 담보사건에 대한 리스크 이전과 분배의 요소들이 해당거래의 차별적 특성이 되는 다른 요소에 단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인가?”를 확인한 후 ③ 규제가치 테스트에서 각 상업적 거래는 그 거래가 공익 목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orat(1999)는 개인 또는 기업의 많은 리스크가 보험시장의 힘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이전될 때 보험거래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기존 주장과의 근본적 변화는 리스크 이전의 효율성(efficiently to the transfer of risk)이 추가되었다.

이런 보험계약 또는 보험에 대한 연구는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를 결정함에 있어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III. 국내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현황

1. 감독제도 및 법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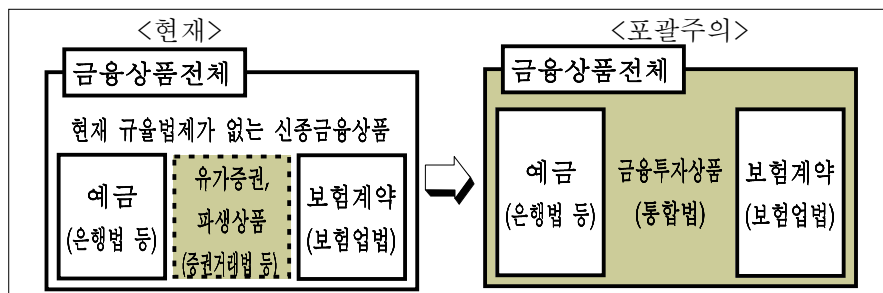
국내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규제는 전업주의를 기초로 한 경영금지의 원칙에 따라 금융업별로 별도의 법률에서 본업을 우선적으로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하여 왔었다. 보험업법은 보험상품¹¹⁾을, 은행법에서는 은행상품을, 증권업관련 법률은 증권을 규제하는 체계로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중첩성은 없었다. 보험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들은 개별법률에서 열거하는 규제대상 금융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고, 법률에서 열거하지 않은 신종 금융상품은 규제대상에 추가하거나 추가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체계였다¹²⁾.

그러나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금융상품 규제체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배경으로 기존 열거주의 규제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¹³⁾. 첫째, 열거주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취급(판매, 중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혁신을 어렵게 하고, 둘째, 법령에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법령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곤란하며, 셋째,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추가로 열거해야 하는 데,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일일이 법령을 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
- 11) 보험업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험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가대상 보험종목을 열거하고 있어 해당보험종목의 보험상품으로 본다.
 - 12) 보험에서 권원보험의 취급에 대하여 별도의 신규허가를 받아 영위토록 한 바 있으며, 파생상품에서도 기초자산으로 열거되지 않은 날씨파생상품 등은 규제대상법률이 없어 취급할 수 없었다.
 - 13) 국회 재정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07. 2., pp. 24~25.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통한 규제차익의 차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개념적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공백을 제거한 후 동일기능의 금융상품은 동일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여 금융상품의 규제차익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¹⁴⁾.

<그림 III-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전·후 금융상품의 범위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재경부, 2006.6.30

자본시장통합법은 규제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기존의 개별법 체계에서의 규제대상의 범위와 비교할 때 차이점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투자상품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 및 예금을 열거주의로 정의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향후 출현하는 신종금융상품의 분류에서 금융투자상품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통적 보험 및 은행상품의 적용배제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요소인 투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취득금액(원본)이 회수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금액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

14)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6.30일, p.20.

고, 회수금액에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열거되지 않은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 또는 신종복합상품(hybrid products) 등 다양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상품이 일단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야 추가적인 해당법률의 개정이 없어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제하더라도 적용규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적¹⁵⁾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현재로서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체계이다. 부분통합 금융법체계라 할 수 있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보험 및 은행상품을 규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투자성이 강한 보험상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법률에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금융상품거래법상의 필요규제 일부를 준용¹⁶⁾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규제체계를 요약해 보면 보험, 은행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포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 열거주의로 규정하는 보험 및 은행상품이 있고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금융상품 규제대상인 해당금융상품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이 달라 개별규제법의 규제대상 금융상품간 중첩성이 발생할 수 있는 체계이다.

그러나 보험과 은행상품을 열거주의로 규정한다는 의미는 전업주의에 의한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보험종목 또는 은행상품을 열거하고, 본체경영 및 부수업무의 범위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의 규제를 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업의 고유업무를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취급

-
- 15) 보험 및 은행상품 판매과정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의무,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하지 않은 재권유 등 부당권유금지(불초청권유 금지는 적용배제),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투자권유대행인제도,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이익보장 및 손실보전 금지, 투자광고 등만 적용한다.
- 16) 보험업법 제300조의2를 신설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의 판매·권유규제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

가능 보험종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은행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예금과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의 발행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험 및 은행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 및 은행상품 현황에서는 해당상품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법 및 관련법률과 그 하부규정과 실제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을 대상으로 향후 보험 및 은행상품의 개념적 정의에 포함될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보험상품과 보험업

가. 보험상품의 정의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없다. 다만, 상거래를 규율하는 상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⁷⁾.

상법 제638조의 보험계약 규정은 보험계약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으로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불확정한 사고의 발생’을 보험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보험사고의 대상과 보험급여의 지급방법은 다른 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손해보험의 불확정한 사고는 ‘재산’에 대하여 발생하고, 인보험의 불확정한 사고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다. 보험급여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험금액’과 현물급여 및 치료 등 서비스 급여와 같은 현금이외의 급여를 말하는 ‘기타의 급여’가 가능하나, 상법 제665조와 제730조에서는 ‘기타의 급여’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법 제737조에서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한하여 ‘기타의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상법 제665조에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17) 상법 제638조

재산상의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정의함으로써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표 III-1>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 및 구분

	구분
정 의	○ 보험계약(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손해보험자의 책임(제665조)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인보험자의 책임(제727조)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생긴다.
	○ 생명보험자의 책임(제730조)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생긴다.
	○ 상해보험자의 책임(제737조)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생긴다.
	○ 연금보험(제735조의2)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 인보험: 생명보험(연금보험 포함)과 상해보험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생명보험에는 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보험법의 범위를 보험계약법(상법의 보험편 및 해상편)을 포함한다고 볼 때, 보험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험업의 규제법인 보험업법에서 규제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을 정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상품의 정의’를 보험업법에 신설하고, 규제대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상법에서 생명보험에 포함하고 있는 연금 중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일부 특별형태의 연금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 뿐 아니라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도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은 생명보험 중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려 하고 있다. 금융업에 대한 규제법률에서 규제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해당법률의 규제대상 금융상품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체계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¹⁸⁾에서 언급했듯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만 취급가능한 상품의 포괄적 정의, 업무범위 확대,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개편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 및 은행이 공정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금융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은행의 업무범위 및 규제체계 등에 관해서도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나, 보험상품의 범위중 어디까지를 포괄적 정의에 포함하여야 하는가도 문제이다. 보험의 개념에 대한 이론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도 전통적 기능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달로 신종복합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기존의 상품분류체계로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보험규제법에서의 규제대상을 정하는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실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취급 현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보고」, 2007. 2. p.25.

나. 보험업무의 범위

보험업 제2조에서는 보험상품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보험업을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이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 생명보험업 허가대상을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및 부동산 권리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공통영역의 보험업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19) 보험업법 제2조

<표 III-2>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정의 및 구분

	주요 내용
정의	보험업법 제2조 (정의) 1.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구분	○ 생명보험: 사람의 생존·사망에 관해 약정한 급여의 제공 ○ 손해보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 제3보험: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해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보상

보험업법을 근거로 하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업 업무의 범위는 고유업무와 경영 및 부수업무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고유업무의 범위는 보험업의 정의와 허가대상 보험종목의 구분을 통하여 확정할 수는 있다²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할 대상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해당보험업에 속하는 보험종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고유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의 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열거된 업무에 한하여 경영 또는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있다²¹⁾.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타 금융업무에는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 ③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가 있다.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에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또는 ② 보험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20)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와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8조 및 보험업법시행규칙 제3조

21) 보험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이 있다.

보험업과 관련된 부수업무에는 보험계리,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의 조사, 보험에 관한 연수·간행물·도서출판업무,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매 업무,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 자동차운행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 재공제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²²⁾.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에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대여금고 업무, 수입인지·복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 기업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컨설팅 및 위험관리 업무, 금융·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금융기관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컨설팅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보험회사 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 등이 있다²³⁾.

22) 공제업무는 영위하는 보험종목과 관련된 재공제 업무에 한함.

23) 보험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표 III-3> 보험업의 업무범위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고유업무	-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업법 제2조
경영업무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보험업법 11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부수업무	- 보험업 관련 업무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보험수리, 보험사고 및 계약 조사, 보험에 관한 연수·간행물·도서출판,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등의 대여 및 판매,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자동차관련 교육·상담·부가서비스, 재공제업무 등 - 보험회사 소유 인력·자산·설비등 활용업무 기업의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대여금고, 수입인지·복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업무, 기업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컨설팅 및 위험관리 업무, 금융·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금융기관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컨설팅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보험회사 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 등	보험업법 11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또한, 현실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취급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보험모집(대리 및 중개업무)업무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무는 특정보험종목이나 계약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한 업무이므로 고유업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⁴⁾. 그러나 고유업무라고 해서 보험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상품은 출구가 아닌 입구에서의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보험료 수입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보험업무에 관한 규정은 보험상품 정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24) 보험업법 제83조, 제106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방법으로서도 유용하다. 일본 보험업법처럼 보험업의 정의만으로는 파생상품의 방법으로 보험상품처럼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파생상품의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3. 은행상품과 은행업

가. 은행상품의 정의

은행상품에 대한 명시적이고 포괄적 정의를 은행법에서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은행업의 정의를 통해 은행의 취급상품의 범위를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²⁵⁾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 및 채무증권의 발행과 대출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예금등의 수신업무와 대출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업무에 수반되는 은행상품의 범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1) 예금등

은행법에서는 예금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열거하고 있다. 은행수신의 수단으로 열거되는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중 유가증권등의 발행은 금융채등의 발행을 통한 일반적 자금조달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은행법상으로는 예금만이 은행의 수신상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예금의 수입을 예금·적금의 수입으로 확장하고 있어 은행의 수신상품은 예·적금으로 볼 수 있다.

2) 대출등

25)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법상 은행업 정의에서는 여신을 ‘대출’로만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개념적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은행법상 규정하는 ‘신용공여’도 여신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여신은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공여로 볼 수 있다. 신용공여의 범위²⁶⁾는 ① 대출, ② 지급보증, ③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④ 어음 및 채권의 매입, ⑤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사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⑥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등으로 수입자금의 실질적인 자산운용 수단을 열거하고 있다.

나. 은행업의 업무범위

은행의 업무범위²⁷⁾는 “이 법과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①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②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 내·외국환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은행업의 부수업무로는 다음과 같다.

은행의 경영업무는 은행업자가 아닌 업무로 은행이 본체(in-house)를 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별도 인가를 거쳐야 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을 경영업무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다.

26)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2.

27) 은행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

<표 III-4> 은행업의 업무범위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고유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적금의 수입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외국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
부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 상호부금 -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 국공채 창구매매 - 팩토링 - 보호예수 - 수납 및 지급대행 -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 지급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 부동산 임대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 파생금융상품거래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 - 전자화폐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27조 - 동법시행령 18조의2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3호
경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18조의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업무 중 여신업무를 제외한 예·적금의 수입등 수신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상품에 대한 경제적 기능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없어 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은행상품의 정의 등을 신설하는 은행법의 보완적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통적 예금상품은 대부분이 원본이 보장되므로 투자성이 없어 금융투자상품과의 중첩성 우려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타금융권과의 경쟁심화와 더불어 금융상품 및 업무의 중첩성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신업무를 중심으로 한 타금융권과의 경쟁 심화는 은행권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수익·고위험의 수신상품 개발이 예상된다. 또한, 금융규제 완화 및 겸업화 추세 속에서 타금융권과의 상품 및 업무영역의 파괴가 확대될 것이므로 투자성이 높은 은행상품도 출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영업무인 신탁업무의 일종이기는 하나 자산운용수익을 경쟁이 가능한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은 이미 취급할 수 있고 부수업무로는 일부 파생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업에 대한 법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적인 법규 적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정의와 업무범위의 규정 및 해석에 올바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은행업의 관련법령 정비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4.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개념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그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열거함으로써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경제적 기능에 근거한 추상적 개념을 상품개념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 대상을

열거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대상범위를 정한 후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방법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세분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전자의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중개, 자문 및 일임운용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구분하고, 집합투자 및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으로 구분하여 인·허가대상 업종에 따른 취급금융상품 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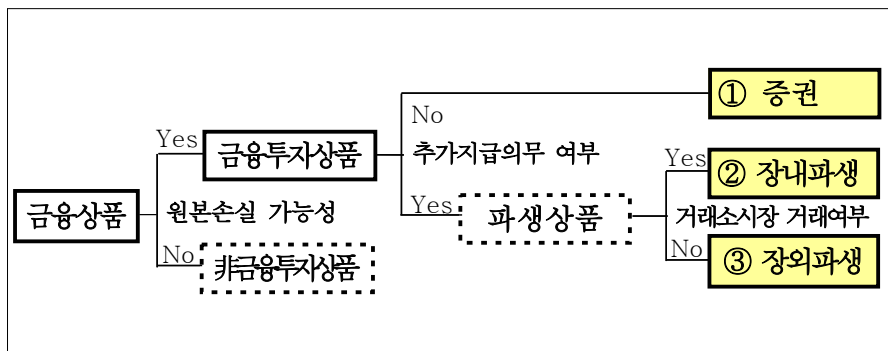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전체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체계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취득금액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회수금액에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전통적 보험상품과 예금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수할 목적이 없이 단순히 소비하는 금액(사업비, 보장성보험료 등)을 원본에서 차감하고, 발행자 도산시 회수불능금액, 중도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회수금액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향후 시장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조화증권, 신종복합상품(hybrid products) 등 다양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상품이 설계·개발될 것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취득금액 및 회수금액에서 차감 또는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구체적 열거를 법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판매수수료·해지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에 위임할 항목의 요건을 법률에 예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금융투자상품의 명시적 제외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보험 및 은행상품이라도 투자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관리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어 개념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나, 만기가 짧아 금리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미미하여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점을 감안하였고, 처분·운용이 결부되지 않는 순수 관리신탁은 처분·운용신탁에 비해 원본손실 가능성이 적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정책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림 III-2>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재경부, 2006.6.30

투자성의 여부는 금융상품의 구조 및 가치변화 등 포괄적인 요소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판단할 경우 투자성이 인정되는 보험 및 예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투자성에 대한 판단이 난해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영역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규제도 받을 수 있어 규제의 상충 및 중복이 우려된다. 또한 파생상품과 보험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이들 사이의 투자성 기준을 구분하기가 어려

우며 영역의 중복으로 인한 규제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예시적 열거주의를 첨부하는 형태로 규제대상을 정하고 있다. 열거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추가지급의무 여부에 따라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⁸⁾.

1) 증권

자본시장통합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증권의 개념에 대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포괄주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 제2항에서 예시적으로 증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시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증권의 종류와 정의는 <표III-5>와 같다.

28) 자본시장통합법제정안 제3조제2항.

<표 III-5>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증권의 예시

종 류	정 의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이와 유사(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유한회사·의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의한 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을 표시하는 것
수익증권	- 법 제110조의 수익증권,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 법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기 타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열거되고 있는 증권의 종류를 보면 기존의 증권거래법상에서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된 유가증권의 개념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과 투자성 증권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새로운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이 있다.

기존의 유가증권의 개념을 내포하는 증권은 현행 증권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약 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간접투자운용업법 상 간접투자증권을 비롯하여 네티즌 펀드, 익명조합지분 등과 같은 비정형 간

접투자지분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중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증권으로 분류되도록 확대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생결합증권이란 투자계약증권과는 달리 외생적 지표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범위는 기초자산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증권으로 추가연계증권(ELS), 신용연계증권(CLN), 재해연계증권(CAT Bond) 등이 포함된다.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과 그 구조가 유사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이 원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⁹⁾.

2) 파생상품

자본시장통합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장내파생상품을 <표Ⅲ-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³⁰⁾에서 거래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Ⅲ-6> 자본시장통합법의 파생상품

	내 용
자본시장통합법 제5조 제1항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의 부여를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9) 하상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보완대책」, 『고려법학 4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pp.1097~1132.

30)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시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함.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표III-6>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생상품의 개념에 포함되는 상품 중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품을 장외파생상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상품일 필요가 없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단위, 인도시기, 대금결제방법 등의 다양한 계약조건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금융투자업의 정의

현행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부동산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등의 금융회사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가진 금융업에 대한 동일 규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 적용을 위한 경제적 실질에 따른 6개의 금융투자업을 구분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6조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다³¹⁾.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능별 금융투자업의 구분은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기 위한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금융기능에 대하여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며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투자자 역시, 동일한 투자자 보호 법제에 적용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

31) 자본시장통합법제정안 제6조

는 한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규제 적용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업의 핵심업무인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은행의 핵심업무인 여수신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나 그 이외의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적용하게 된다.

현행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여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의 범위를 요약하면 <표 III-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금융투자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와 무관한 업으로 보험사도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신탁업은 보험회사 경영업무로 허용하여 전적으로 신탁업 규제를 준용하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명확화가 필요한 분야로 본다. 집합투자업을 보험회사 경영업무라면 신탁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상 경영업무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집합투자업의 범위도 허가받은 변액보험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³²⁾. 변액보험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차원의 필요규제가 있다면 보험업법 개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집합투자업이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면 신탁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 경영업무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2) 자본시장통합법 제251조 참조

<표 III-7>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모습

통합 前(현행)		통합 後(기능별 분류)					
금융업		금융업	정의	전업단위			
(방카슈랑스)	보험업	보험계약 체결·이행업	보험계약의 체결(인수)과 계약상의무를 이행하는 업무	보험업 (종전과 동일)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수신업	예금계약을 통해 금전을 수취하여 지급보증 등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업무	은행업 (종전과 동일)		
신협							
(어음관리계좌)							
(채권인수)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펀드판매)	증권업	선물업	종금업	① 투자 매매업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금융 투자업
은행업					② 투자 중개업	타인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은행, 보험사, 부동산산박투자회사 등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③ 집합투자업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	
은행, 증권, 보험사	신탁업				④ 투자 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업무	
			⑤ 투자 자문업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⑥ 신탁업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특정의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업무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재경부, 2006. 6. 30

IV.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

1. 법률체계 측면

가. 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통합금융업 영위의 조직이 나타나기 전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보험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업법, 은행법, 증권 및 선물거래법 등 개별업법에 따라 규제되었다. 종전의 금융규제 법률들은 금융분업주의 체제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당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취급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합금융상품 또는 유사기능 금융상품의 혼재 등 시장상황이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종전 금융분업시대의 기관중심의 열거주의 규제방식에서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기능별 규제를 위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에 기능별 통합금융법률 체계를 검토하였으나, 개별금융법률간 현격한 규제차이의 존재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충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부분적 통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볼 수 있다.

부분통합금융법의 사례는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2002년 홍콩과 2001년 싱가포르의 증권선물개혁법 등이 있다. 부분통합금융법 체계인 일본, 홍콩 및 싱가포르 모두 보험상품의 적용배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영국의 금융법률 통합과정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부분통합금융법 체계로 일단 전환했으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함으로써 통합금융법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바 있다. 과거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적용대상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장기보험계약, 그리고 집합투자 등 '투자성'이 강한 '투자상품' 혹은 '자본시장상품'으로 정의하여 생명보험의 투자성상품을 포함하였으나, 규제상 구분의 문제, 규제원칙의 불균등성 문제 및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등으로 2000년 완전금융통합법 체계로 전환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분통합금융법이면서 투자성 보험상품 일부를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이는 일본과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부분통합금융법 체계들이 보험상품의 적용제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분통합금융법 체계인 자본시장통합법이 그 적용대상을 투자성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금융법률의 적용대상 구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성 기준이 인정되는 모든 보험상품과 은행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열거주의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분류체계를 업별 특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거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보험과 은행상품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금융상품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도 포괄적 정의로 규제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위반하는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은 규제중심이지 소비자중심이 아닌 것으로 위협적이다. 이런 점에서 초안의 포괄주의에서 포괄적 정의와 해당금융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부분통합금융법이면서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열거대상 금융상품을 명백하게 적용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정적 열거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열거되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은 여전히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 모든 투자성 보험 및 은행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위험전가라고 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상품분류기준으로 제시한 투자성은 금융투자상품의 대표적 속성일 뿐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유일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금융상품의 분류를 한가지 기준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적 적용제

외, 경영 및 부수업무에의 추가 등 보충 또는 보완적 분류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유사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유사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정의에 따라 광범위하나 우체국금융·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조직, 새마을금고에 의한 금융·보험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적으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금융회사와 다른 규제를 받는 유사금융상품은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에서의 명시적 적용제외 또는 명시적 포함 여부와 해당유사금융기관의 업무취급에서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배제 여부에 따라 규제법률이 다를 수 있고 규제차익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은행상품의 규제법률인 은행법 제2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고, 제5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은행업무와 은행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규제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사금융기관의 설립 및 규제 법률에서도 은행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은행상품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 규제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인 한 동일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체계이고, 유사금융기관 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배제를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은행과 금융투자상품과는 조금 다른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히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조항이 없으면서도 시행주체가 정부라는 특성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사회보험도 보험규제대상으로 장기보험의 한 종
 목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차익 방지를 위하여 동일기능 동일
 규제원칙을 도입한다면 정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정경쟁차원에서도 민간
 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³³⁾.

<표 IV-1> 유사금융기관의 은행법 및 보험업법 적용 현황

구 분	은행법 적용여부	보험업법 적용여부
우체국금융업무 (우체국예금·보험에관 한법률)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농협금융업무*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 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 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배제 (제12조제1항)
수협금융업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 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 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제 (제12조)
신협금융업무 (신용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임(제6조제3항)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 배제 (제6조제1항)
새마을금고금융업무 (새마을금고법)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 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임(제6조제1항)	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 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제 (제6조제2항)

주 : * 은행법에서도 금융기관으로 인정(은행법 제5조)

2. 금융상품과 금융업에 대한 정의측면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다른 금융상품 또는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일상품 및 업무에 대한 차별규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규제 형평성면에서

33) 사건으로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율시장기
 능의 실패가 전제되지 않은 모든 정부의 직접시행 금융업무는 중단하거나 민영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가능적으로 동일한 상품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정책’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 금융업 법률체계의 문제점은 금융상품과 금융업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금융상품 정의체계의 불일치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업법들의 규정을 보면,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없는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단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또는 은행상품이라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면 일단은 금융투자상품의 영역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전에 포괄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금융업 법률들이 다른 금융상품의 영역까지 규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금융통합법 체계로의 일보 전진이라고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포괄적 정의를 갖지 못한 보험업법과 은행법은 법해석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역주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은 투자기능에 따른 투자성 기준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나, 금융상품전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상호배타적이면서 포괄적(mutually exclusive and inclusive)인 기준을 제시하는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아직은 해외사례중 부분금융통합법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와 투자성 기준과 같은 단일기준으로 보험, 은행 또는 투자상품의 적용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포괄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은 포괄적 정의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용대상 금융상품을 열거방식만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정의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

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금융상품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신상품이 출현할 때 투자성 요건이 충족하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열거되지 않은 투자성이 있는 보험과 은행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단 분류하게 된다.

둘째, 중첩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열거 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성과 위험보장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고 보험상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해당법률에 열거하면 해당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첩성상품 출현에 대비한 분쟁해결 또는 조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나. 금융업 정의의 한계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해당금융업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은행업 정의에서는 제한적 자금중개기능(예금의 수입 등의 조달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등의 기능으로 목적과 기능을 정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은 보험사고에 대한 약정급여의 제고 및 손해보상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의 업정의를 비교할 때, 은행업의 정의는 은행이 고객의 자금을 받아 대출에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험업은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직접 정의함에 따라 보험상품 중심으로 업정의를 보장기능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수수하는 핵심적 기능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약체결의 대리·중개기능 및 계약관리기능과 수수한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까지의 대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매 등 자산운용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수입과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은 결과적인 자금의 유입은 동일하지만 그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은행은 채무증서 발행으로 원리금의 부담을, 보험은 약정급여의 제공 또는 손해의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금 이외에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근거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환급 및 무사고환급 등도 명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의 업정의에서도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6개의 열거된 금융투자업을 정의하면서 금융상품의 취급(매매, 중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투자업과 신탁업은 취급업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6개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보험회사와 은행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집단투자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향후 금융겸업화 정책에서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와 겸영업무의 분류기준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다. 경영 및 부수업무 규정 및 범위의 불균형

금융회사들은 법률이 정한 고유업무이외에도 정책적으로 허용된 경영 및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경영 및 부수업무는 법령에서 해당업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기타 유사업무는 하부규정에 열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서는 부수업무(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예시없이 재정경제부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모든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 열거하면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다.

보험업 부수업무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업 부수업무는 없어 실제 보험업 부수업무는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의 부수업무에 대한 규정방식은 네거티브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①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②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감독위원회에 7일전 신고한 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도 보험업과 달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고, 하부규정에서 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체계이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제40조 제1호에서 금융투자업의 겸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은행은 부수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과 파생상품거래의 취급을 겸영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규정하는 점 등은 체계적 일관성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IV-2> 금융업별 경영 및 부수업무 법령규정 현황

구 분	경영 및 부수업무
경영 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법제11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항)
보 험 부수 업무	-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보험에 관한 연수·간행물·도서출판업무,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매 업무,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 자동차와 관련된 교육, 상담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 재공제 업무(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과 관련된 재공제 업무에 한한다) 등 -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대여금고 업무, 수입인지·복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 기업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 및 위험관리 업무, 금융·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종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보험회사의 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p>(법제11조제1항 제3호 및 법시행령 제16조제3항)</p>
구 분		경영 및 부수업무
인 행	경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업무 -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법시행령제18조의3)
	부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법시행령제18조의3 제4호)
금 용 투 자	경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부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p>

	2.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	--

3. 주요이슈를 통해 본 문제점

가. 투자성 금융상품의 분류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명시적으로 적용제외하고 있는 ①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②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³⁴⁾에 의한 처분권한은 제외)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의 수익권에 한해서는 투자성이 있지만 기간의 단기성과 수탁자의 현실적 의무이행성³⁵⁾을 고려하여 적용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및 은행상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것인지는 투자성 여부에 달려 있다. 투자성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상 기준은 ‘투자원본이 미래 투자회수금을 하회할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은행상품은 원본보장이 되므로 큰 상관은 없으나, 보험상품 대부분은 일단은 투자성이거나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

34)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당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보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5) 퇴직연금신탁과 같이 자산운용계약과 신탁계약이 분리되는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과 계약이행상의 의무를 수탁자가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원본과 투자회수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될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체계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었다. 원본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매수수료 뿐 아니라 소멸성 보장보험료, 기타 계약관리 등의 사업비 등 미래의 반환을 위하여 적립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인 보험상품의 범위가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체계이다.

투자회수금에 대해서도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해지로 인한 비용은 회수금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투자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지수수료이외에 도산시 회수불능금액, 세금 등을 회수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와 체계의 불안정성은 동일하다.

투자원본과 투자회수금을 법시행령에서 적절하게 규정하는 경우 전통적 보험상품인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보험은 적용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이 전통적 보험상품이지만 투자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변액보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원본과 회수금의 기준을 보험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원본 > 회수금' 될 위험이 있는 보험상품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볼 때, 변액종신 및 변액이보험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가 원본에서 제외되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고, 최저보장 변액연금의 경우에도 원본이 보장되므로 적용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본 일부보장형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표 IV-3> 변액보험의 종류 및 내용 비교

구분		상품내용	운영현황
변액종신 및 변액CI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회수금 : 사망보험금 및 정액보장금액 담보	- 자산운영 초과수익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정액보험금을 증액만 가능
변액연금	최저보장형	- 보험료 : 저축보험료 - 회수금 : 원본이상의 연금지급액 *원본보장보험료 있음	- 자산운영시 주식투자(50%정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본은 보장
	일부보장형	- 보험료 : 저축보험료 - 회수금 : 원본이하의 일정비율 보장 또는 실적에 따른 연금지급액 차등 *원본보장보험료 있음	- 자산운영 수익악화시 원본의 일정비율까지만 보장(최저보장형 변액연금 판매사에 한해 판매가능)
변액유니버설		- 보험료 : 수시납 저축보험료 - 회수금 : 실적에 따른 만기적립액 지급	- 주식투자비중이 높은(90%까지)경우도 가능한 투자성이 높은 보험상품임 - 다만, 사망보험금 담보는 기납입보험료이상으로 하여야 함

그러면 보다 근본적 문제로 투자성이 있는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야 할 이유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자본시장통합법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 주로 영업행위규제에 대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포괄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통하여 포함된 보험 및 은행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합성 원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는 이미 보험업법에서 근거 규정이 있거나 현재로서도 규제가 가능하여 규제차익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4> 투자성 보험·예금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규정

구 분		적용대상 조문
자본시장통합법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동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제2관 투자권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제3호 방문전화 판매 제외)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7조(투자광고)

나. 장외파생상품과 보험상품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에는 장외파생상품이 특정금융권역에 독점적 권한이 부여된 금융상품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파생상품의 범위도 일정범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종전의 장외파생상품규제와 관련한 법률과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이 날씨 및 신용위험을 제외하고 있었다.

<표 IV-5> 자본시장통합법 전후의 장외파생상품 정의 비교

구분	정의 내용
간접투자 자산운용 법령	<p>-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법제2조제9호)</p> <p>- 법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장내 파생상품거래중 거래의 결과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제외한 거래를 말함(법시행령 제10조)</p>
자본시 장통합 법 이전	<p>-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로 정의</p> <p>가.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의 수치</p> <p>나. 통화 또는 일반상품(선물거래법상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p> <p>다. 신용위험의 지표</p> <p>(법시행령제36조의2제1항 제1의2호)</p>
선물 거래법령	<p>- 선물거래의 대상범위 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일반상품)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금융상품)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라 한다) <p>(법제2조)</p>

구분	정의 내용
자본시장통합법 이전	-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법 제3조 제1항 제17호) -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의 거래를 말함 1.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2. 상품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 나. 상품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 (법시행령제8조)
자본시장통합법	-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

구분	정의 내용
자본시장통합법	<p>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p> <p>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함(법제5조) -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법제4조제10항)

금융회사별 장외파생상품의 취급범위를 보면, 보험회사만 장외파생상품의 취급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증권회사는 2005년 3월 28일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증권회사가 겸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대상에 ‘신용위험의 지표’를 추가로 허용하였고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된 장외파생상품거래도 자기거래인지 타인거래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나 허용근거를 마련하고는 있다. 일본의 경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금융 등 파생금융상품을 폭 넓게 허용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표 IV-6> 금융회사별 장외파생상품의 취급범위

구 분		취급대상 장외파생상품의 범위
보험 회사	한국	- 없음
	일본	- 금융등파생금융상품거래 금리, 통화의 가격, 상품의 가격, 기타 지표의 수치 로서 사전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수치와 장래 일정 시기에 있어서 현실의 당해지표의 수치의 차이에 따라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또는 이들과 유사한 거래(법제98조제1항)
은행		- 파생상품거래. 다만,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는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 (재정경제부 고시: 은행업의 부수업무)
금융 투자 회사	자통법이전	- 허용된 장외파생상품 전부 통화, 금융상품, 일반상품 및 신용위험의 지표
	자통법이후	- 허용된 장외파생상품 전부 통화, 금융상품, 일반상품, 신용위험과 그 밖에 자연 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 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날씨위험 포함)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면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날씨, 신용위험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규정함에 따라 거의 모든 기초자산의 장외파생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게 되었다³⁶⁾.

장외파생상품업무의 성격은 증권회사도 본업이 아닌 경영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은행도 제한적으로 부수업무로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보험회사의 경영업무로도 허용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다. 특히, 날씨 및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날

36) 자본시장통합법 제4조 제10항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범위를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씨보험과 보증보험과 본질적 기능이 유사하여 경영업무로 허용하는 경우 효율적 업무수행도 가능한 분야이다.

날씨파생상품의 보험상품적 성격에 대하여 뉴욕주 보험청은 날씨파생상품은 사고의 우연성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입자의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자의 지급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³⁷⁾에서 보험상품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³⁸⁾하고 있으며,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는 날씨파생상품이 상품구조적 측면에서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구매목적이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담보위험(perils)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손실의 위험(risks)을 분산하는 것임에도 보험규제의 회피를 위해 비보험금융상품(non-insurance products)으로 포장하고 있으므로 적정준비금의 적립 및 솔벤시규제 등을 통한 일반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표 IV-7> 미국의 날씨보험 및 날씨파생상품 상품구조 비교

구 분	날씨보험 (Weather Insurance)	날씨파생상품 (Weather Derivatives)
목 적	날씨로 인한 손해 보상	날씨로 인한 수익상실 또는 투기적 이익 추구
보상형태	실손보상	지수변동에 따른 정액보상
보상한도	보상한도 존재	지급한도 설정 가능
상품가격	보험료	옵션프리미엄등
보상기준	보험사고의 발생	행사가격 또는 지수에 도달
수 익 자	피보험자	상품구매자
손해사정	필요	불필요
전가시장	전통적 재보험시장	자본시장

37) 파생상품의 특성과 구매자의 이해 및 책임관계의 특정 상황. 즉, 날씨위험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날씨파생상품을 구매하여 날씨위험으로 실제 손해도 발생하고 그런 손해를 보상할 정도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 기능적으로 보험과 차이는 없음.

38) 뉴욕주보험청, Weather Financial Instruments, Circular 2000. 2. 15.

39)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 "Weather Financial Instruments(Temperature): Insurance or Capital Markets Products(09/16/0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또다른 논쟁대상은 신용파생상품이다.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신용상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상품으로 특정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또는 은행등이 신용공여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지급보증업무와 신용리스크의 이전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날씨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보험상품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실손보상원칙이 항상 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또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험회사는 신용파생상품을 보장매도자로 취급할 수도 없고 자산운용으로도 투자할 수도 없다. 보험회사에는 장외파생상품의 취급이 경영 또는 부수업무로 허용되지 않았고 투자대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면적인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금지조항⁴⁰⁾에 따라 보험상품으로 허용된 것이 아닌 한 채무보증이 금지되므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다. 채무면제·유예계약(DCCDS)과 보험상품

채무면제·유예계약(DCCDS)란 채무면제계약(DCC: debt cancellation contract) 및 채무유예계약(DSA: debt suspension agreement)을 통칭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에 대하여 사망, 재해 사망, 신체상실, 장애, 실업, 가사 휴직, 경조사, 입원, 병역, 자연 재해 등의 일정한 사건(protected event)이 발생하면 채무상환을 면제 또는 유예해 주기로 차입자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대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금융상품이다.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국내 논쟁은 최근 일부 할부금융회사와 신용카드회사가 동 상품을 취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험업법

40)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험업법 제113조).

위반임을 통보하고 업무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⁴¹⁾. 보험회사가 아닌 할부금융 회사등이 채무면제·유예계약을 취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면제·유예계약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서비스의 성격이 보험상품의 성격과 다르다는 주장과 주업무인 대출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라는 주장도 있다.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차입자의 사망 등 전형적인 우연성이 있는 보험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의 성격과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수업무라는 주장도 다른 업권의 고유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부수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융검업화의 취지와 통상적 경영업무를 규정하는 금융법률체계에도 맞지가 않다.

또한, 채무면제·유예계약이 현행처럼 운영될 경우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보험계약에 아니므로 가격 및 상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보험가격 및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을 받지만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수수료 등은 대출자가 차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차입자는 협상력이 약한 상태에서 수용여부만 결정할 수 있어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둘째, 판매과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장치가 없다. 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보험회사 배상책임 등 보험업법에 구체적 금지행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이 아닌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서비스의 성격,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

셋째, 금융회사의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우려가 있다. 대출계약과 차입자의 사망의 관계를 볼 때, 차입자 사망과 대출계약은 무관하므로 차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대출채권은 유효하고 다른 차입자의 재산에 채권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출채권을 금융회사 스스로 면제 또는 유예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무면제·유예계약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의 회수권한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부담해야

41) 금융감독원 보감조9123-00583, “보험상품과 금융상품의 결합판매에 따른 유의사항”, 2005.8.19.

한다.

미국 뉴욕주 법무국장(Attorney General)이 처음으로 채무면제계약에 의견을 피력한 것은 1964년의 일이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가 차입자와 체결한 차입자 사망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에 대하여 해당계약은 보험계약이고 내셔널뱅크는 보험회사의 지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⁴²⁾. 채무면제 계약에 대한 법무국장의 의견은 채무유예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에 대한 통화감독당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의견은 내셔널뱅크의 명시적 권한인 대출업무에 부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71년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12 CFR Part 37)을 제정하였다. 1999년 금융개혁법인 그램-리치-블라일리법(the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또한번의 논란이 있었다. 동법 제302조는 내셔널뱅크에 허용하는 보험상품 취급범위를 규정하면서 허용된 보험상품으로 범위를 한정 하였다. 허용된 보험상품의 범위는 1999년 1월 1일 현재 통화감독당국이 내셔널뱅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상품 또는 내셔널뱅크가 실질적이고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최종적인 법원판단으로 통화감독당국이 허용한 내셔널뱅크의 상품취급에 대하여 반대의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LBA 제104조(a)는 보험에 대한 기능적 규제자로 주규제를 인정하고 있고 채무면제·유예계약이 주보험법하에서 보험상품으로 인정되는 한 주보험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2년 4월 2일 미국 뉴욕주보험청이 제시한 의견은 채무면제·유예계약을 발행한 내셔널뱅크에 대하여 보험인수와 관련한 보험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내셔널뱅크의 업무를 금지 또는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규제의 적용은 GLBA 제104(d)(A)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보험당국이 예금금융회사(depository institution)의 허용된 보험판매업무를 금지하거나 심하게 방해(prevent or significantly interfere)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어 개별건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4년 4월 2일 미국 뉴욕주은행청은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입장을

42) 1964 Op. Atty. Gen. 30.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입에 대한 성격, 비용 및 관련위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해당금융회사가 보험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을 제공하는 주체는 뉴욕주보험법과 관련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의견은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체결은 보험사업에 해당하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연금 및 투자상품의 취급

생명보험의 기본적 효용은 조기사망(premature death)에 따른 인간생애가치(human life value)의 상실을 보장하는 것인 데 반해, 연금은 장수(longevity)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의 측면에서 생명보험제도는 필요자금을 생성하는 방법이고, 연금제도는 축적된 자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생명보험제도는 소득을 생산하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만드는 기능을 하고, 연금은 소득생산이 중단된 연금수익자에게 축적된 자금을 활용하여 중단된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금제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축적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노후에 안정적 경제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연금의 기능은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국내에서도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연금상품 취급도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금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보장기능을 담당하므로 보험상품이다. 연금보험의 보험사고는 생존으로 생명보험의 보험사고인 사망과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연한 사고의 발생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 뿐 아니라 미발생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보기⁴³⁾ 때문에 생존보험인 연금도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생존보험이지만 특별히 법령으로 정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생명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은행, 우체국, 자산운용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도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⁴⁴⁾.

생명보험회사 뿐 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우체국 등이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연금상품의 범위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계약,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퇴직연금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은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⁴⁵⁾.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계약은 연금저축과 세제적용등과 요건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⁴⁶⁾,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이라는 상품성격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생명보험회사 이외에 손해보험회사와 다른 금융회사가 취급하

-
- 43) 'Fortuitous event' means any occurrence or failure to occur which is, or is assumed by the parties to be, to a substantial extent beyond the control of either party(미국 뉴욕주보험법 제1101조(a)(2)).
- 44) 선진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인 3층보장론(three pillar system)에 입각한 공적연금에 의한 사회보장, 퇴직(기업)연금에 의한 기업보장 및 개인연금에 의한 자기보장의 3층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2층보장)과 개인연금(3층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있다.
- 45) 연금저축의 요건으로 ① 취급기관을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협 및 수협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간접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②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③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④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2).
- 46)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의 요건은 ① 취급기관을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협 및 수협조합 등으로 제한하고, ②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③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④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는 개인연금은 급부금이 분할하여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나, 저축형태로 관리되며, 생존확률이 보험료 또는 급부금의 계산에 사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확정연금급부의 형태이다. 퇴직연금은 자산관리계약의 일종으로 생존확률이 반영된 생존보험으로서의 연금과는 구분된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농협·수협공제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제적격개인연금의 종류는 자산운용측면에서 수익률 부리방법에 따라 확정금리형⁴⁷⁾, 금리연동형⁴⁸⁾, 실적배당형⁴⁹⁾ 이 있고 연금지급의 형태에 따라 확정형과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표 IV-8> 세제적격개인연금 취급기관별 상품 비교

구 분	은행(농수협 중앙회포함)	투신사	생보사	손보사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수 익 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 연동형
적립방식	자유식	자유식	정액식	정액식	정액식	정액식
연 금 지급방식	확정형	확정형	확정형, 종신형	확정형	확정형, 종신형	확정형, 종신형
충도해지	원금 및 일정이자 지급	원금 및 일정이자 지급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원금 및 일정이자 지급
형 태	신탁	신탁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예금보호 여 부	보호	비보호 ¹⁾	보호	보호	비보호 ¹⁾	보호 ²⁾

주 : 1)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적립하여 보호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기관으로서 지급이 보증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 47) 계약시 연금적립금 및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예정이율을 보장하고 있음.
- 48)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적립금 및 연금액이 변동되는 형태의 보험.
- 49)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 적립금 및 연금액이 연동되는 형태의 보험.

의 방법으로 자산관리하는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를 체결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제도에는 연금형태로는 확정급여형⁵⁰⁾과 확정기여형⁵¹⁾이 있고, 저축계좌형태의 개인퇴직계좌가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속하는 자산의 관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등을 말한다⁵²⁾.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계약체결의 방법이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가능하며, 자산관리방법에 따라 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기여형 연금과 개인퇴직계좌(저축계좌)로 구분되지만, 실제 자산운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사용자 또는 수익자에 속하는 것으로 자산관리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 50)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사용자가 적금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위험도 부담한다.
- 51)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제도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위험도 부담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성과 및 그에 따른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의 변동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 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표 IV-9>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적용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동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기업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
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제도간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이전 용이
최적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제 도입기업 ▪채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V. 해외사례

1. 미국

가. 보험

1) 보험상품의 개념

미국의 금융통합법으로 인용되는 금융현대화법은 보험에 관한 주보험당국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주보험감독은 주보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보험상품은 주보험법을 근거로 해석된다. 다만, 주보험법과 은행 및 증권상품을 규제하는 법률간 상충이 있는 경우 법원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개선방안은 보험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이므로 주보험법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보험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적 규율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단위로 약간씩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보험법이 다른 주보험법의 전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보험법 체계를 통하여 미국 전체의 보험관련 규제에 대한 시각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에 대한 추상적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허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법 제1101조에서는 보험계약을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 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합의 또는 기타 거래⁵³⁾”로 정의하고

53) 'Insurance contract' means any agreement or other transaction whereby one party, the 'insurer', is obligated to confer benefit of pecuniary value upon another party, the 'insured' or 'beneficiary', dependent upon 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 in which the insured or beneficiary has, or is expected to have

있다. 이와 더불어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중 일 당사자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벗어나거나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에서의 발생 또는 비발생(발생의 실패)을 의미한다⁵⁴⁾’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담보, 보증 및 신용보증계약은 담보자, 보증자 또는 신용보증자가 보험자이거나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만 보험사업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⁵⁵⁾.

보험계약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와 함께 허가 대상이 되는 30여개의 보험계약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⁵⁶⁾. 세부보험계약의 종류는 <표 V-1>과 같다.

<표 V-1> 뉴욕주 보험법의 세부 보험상품 분류

	세부보험계약의 종류
뉴욕주보험법 제1113조	생명보험, 연금, 상해·건강보험, 화재보험, 재산보험, 누수보험(water damage), 도난보험, 유리보험, 보일러·압축기보험, 승강기보험, 동물보험, 충돌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사용자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권원보험(title), 자동차 및 항공 상해 보험, 자동차·항공기체보상보험, 해상·내륙해상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잔여가치보험(residual value), 모기지보증보험, 실업신용보험(credit unemployment), 재정보증보험(financial guaranty), 차액보험(gap), 상금보상보험(prize indemnification), 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 비자발적실업보험 등과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종류의 보험

이 중 생명보험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체의 보험 및 그것에 부속하는 일체의 보험을 말하며, 생존급부(endowment benefits), 재해사망시 부가 급부,

at the time of such happening, a material interest which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happening of such event.

54) (2) 'Fortuitous event' means any occurrence or failure to occur which is, or is assumed by the parties to be, to a substantial extent beyond the control of either party.

55) 'Contract of warranty, guaranty or suretyship' means an insurance contract only if made by a warrantor, guarantor or surety who or which, as such, is doing an insurance business.

56)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

계약실효를 저지하는 부가급부 사망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급부(accelerated payment), 특별해약 환급금(special surrender value) 등이 포함된다. 사망의 범위에는 (A) 12개월 이내의 여명으로 정의되는 말기증상(terminal illness), 또는 (B) 여명과 관계없이 특별한 의료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 상황에 있다고 판단 또는 (C) 피보험자가 만성병 적격시설 또는 내국세입법 제 7702(B) 조 및 부속 규칙소정의 만성질환인 경우는, 적격시설, 재택에서 그 생명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호를 필요로 하는 병증에 대한 면허 의료 개업의에 의한 증명서에 기초를 둔 사망보험금 또는 특별해약 환급금(special surrender value)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급부(accelerated payment) (단, 그 선불급부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세입법 101조(g) (3) 및 적용가능한 연방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업 또는 피보험자가 사설 요양원의 거주자인 경우의 계약실효를 저지하기 위한 부가급부를 포함한다. 생명 보험 때문에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및 보험금 지불 방법 선택권 또는 배당 방법 선택권에 기초를 두고 총당된 금액은, 보험자가 보험법 제4240조에 따라 분리 계정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⁵⁷⁾이란 생명보험의 인가에 기초를 두고 행하여진 지급을 제외하고, 일정기간의 정기적 지급(periodical payment)을 하는 모든 계약 또는 인명의 존속에 따라 일련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어떤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속 지급하는 계약(agreement)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망을 또는 생존률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생존급부를 제공하는 모든 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의 보험계약성에 대한 보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의 정의

57) 'Annuities' means all agreements to make periodical payments for a period certain or where the making or continuance of all or some of a series of such payments, or the amount of any such payment, depends upon the continuance of human life, except payments made under the authority of paragraph one hereof. Amounts paid the insurer to provide annuities and proceeds applied under optional modes of settlement or under dividend options may be allocated by the insurer to one or more separate accounts pursuant to section four thousand two hundred forty of this chapter(뉴욕주 보험법 제11131조(a)(2)).

에서 말하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시점에 받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고발생에 의한 악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뉴욕주 보험법 제1101조(b)(1)(D)에서 세부 보험종목의 취급을 보험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a)(2)에서 연금을 세부 보험종목으로 열거하므로 연금의 취급은 보험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⁵⁸⁾.

또한,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연금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겸영을 금지하는 생·손보겸영 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⁵⁹⁾.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역시 보험계약에 대한 추상적 정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종류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정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Insurance Code)에서는 ‘보험은 일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우발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손상 및 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⁶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열거하고 있다⁶¹⁾. 또한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역시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58)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Sale of Annuities in New York",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on December 18, 2006.

59) 뉴욕주 보험법 제107조 및 제4205조.

60)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one undertakes to indemnify another against loss, damage, or liability arising from a contingent or unknown event.

61) 캘리포니아 보험법 제22조 및 제100조.

<표 V-2> 캘리포니아주 보험의 분류

	분류
캘리포니아주 보험법 제100조	생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소유권증서보험, 보증보험, 장애보험, 유리보험, 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운송보상보험, 난방기·압축기 보험, 도난보험, 신용보험, 스프링클러보험, 수송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저당보험, 항공보험, 주택저당채무대납보험, 지불불능(insolvency)보험, 법률(legal)보험, 기타손해보험

2) 보험업의 개념

미국 뉴욕주 보험관련 법에 의하여 감독당국에 면허(license), 등록(registration) 등을 요구받는 규제대상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사고 및 건강 보험업, 보험중개업, 보험대리업, 보험자문업, 초과액보험중개업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업이란 주외로부터 우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행된 하기의 행위도 포함하여 (A) 보험자로서, 본주내 거주자 혹은 본주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개인,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한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서의 발행 또는 교부 및 그와 같은 보험증권 혹은 보험계약의 신청 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의 신청을 행할 것, (B) 보증인이, 적절한 업무 또는 활동의 단순한 부대 업무로서가 아닌, 본업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체결의 신청하는 것, (C)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회비(membership fee), 부과금(assessment) 또는 기타의 대가를 징수하는 것, (D) 보험업 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보험종목⁶²⁾(재보험업무를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것, (E) 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상기의 어느 것에 상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또는 그 기획하는 것 등이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들이다⁶³⁾.

뉴욕주에서 생명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사

62)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에서 정하는 세부 보험종목을 말한다.

63) 뉴욕주 보험법 제1101조(b)(1).

고 및 건강보험, 법률서비스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경영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⁶⁴⁾.

또한, 보험업의 부수업무로 보험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투자관리업무(investment management service)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외 업무도 감독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영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⁶⁵⁾. 뉴욕주 보험법 제3222조에 의하여 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자에 허용한 기금적립협정(funding agreement)업무는 보험계약의 정의와 관계없이 기금적립협정의 체결 또는 교부를 보험업 영위(doing an insurance business)로 간주하고 있다. 기금적립협정은 보험업이 인가된 사람 또는 그 자회사에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entities) 및 개인에 대해서는 (i) 합중국 또는 외국에 설치된 1974년 ERISA 소정의 종업원퇴직연금제도에 의거하는 연금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ii) 내국세법 제501조 (c)의 과세면제 단체 혹은 유사단체의 활동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iii) 연방 정부, 주 정부, 외국 또는 그러한 정치 하부조직 혹은 그러한 기관의 어떠한 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iv) 청구권 변제의 정기 지불을 제공하는 협정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또는 (v) 2500만 달러를 넘는 자산을 가지는 법인의 어떤 제도에 대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연기금 대행업무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적립협정을 이용하여 연기금 관리대행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험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거래에서 해당거래를 인수한 기업 또는 해당거래의 발생손해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기금적립협정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⁶⁶⁾.

그러나 기금적립협정은 사망률 혹은 질병발생률의 우발성에 의거한 보험자에 의한 지급 또는 보험자에 대한 지급을 약정해서는 안 되고, 1이상의 분리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험감독관은 (i) 기금적립 협정의 양식, (ii) 기금적립협정을 발행하는 보험자가 적립해야 할 준비금, (iii) 기금적립협정에 의거

64) 뉴욕주 보험법 제4205조.

65) 뉴욕주 보험법 제1714조.

66)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Indemnity Agreements Related to the Securitization of Funding Agreements",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on May 30, 2000.

지급해야 할 기금의 회계 및 보고, (iv) 기금적립협정의 가입자 및 가입 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개시, 또는(v) 보험자를 대리하여 기금적립협정을 판매하는 사람의 자격과 보수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은행

1) 은행상품의 개념

미국의 금융관련 법률에서 예금(deposit)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에 대한 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서는 연방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은행의 예금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규제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의 근거법에서 부보대상 예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양한 예금보험 부보대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금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근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금(deposit)의 개념은 <표 V-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V-3> 미국 예금보험공사법에서 예금의 정의

	주요 내용
예금보험공사 근거법 (FDIC 제3조 1항)	“예금”이라 함은 (1) 은행 또는 저축조합(savings association)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수취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 현금 잔액 또는 그 등가물로서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상업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또는 정기예금 계좌에 대기했거나 대기하여야 할 것. 또는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저축증서(thrift certificate), 투자증서(investment certificate), 채무증서(certificate of indebtedness) 또는 기타 유사한 이름의 증서 또는 예금계좌에 대하여 발행되고 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보증한 수표나 환어음(draft), 또는 은행이나 저축조합에게 일차적 지급 의무가 있는 신용

	<p>장(letter of credit) 또는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 ...</p> <p>(2) 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수취 또는 보유하고 있는, 본 법에서 정의 된 바의 신탁자금(trust funds)으로서, 동 은행 또는 저축조합의 신탁부에서 보유하고 있든 다른 부에서 보유 또는 예치하고 있든 관계가 없다.</p> <p>(3) 은행이나 저축조합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특별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p>
	<p>주 요 내 용</p>
<p>예금보험공사 근거법 (FDIC 제3조 1항)</p>	<p>취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그 등가물의 대기액으로서 그 법적 관계를 불문하고 다음의 항 등을 포함한다. 신탁 자금(escrow fund)⁶⁷⁾, 은행 또는 저축조합 또는 기타 에 대한 채무(obligation)의 담보(security)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딜러의 지급준비금(dealers reserve)) 또는 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대출한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채무의 만기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가 예치한 자금, 미국채에 대한 청약금(payment on subscriptions)으로 예치한 자금, 증권의 배정 또는 매입을 위하여 예치한 자금, 은행인수어음(acceptance) 또는 신용장의 지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원천징수세액(withheld tax) 등</p> <p>(4) 미결제 환어음(outstanding draft)(은행 또는 저축조합이 다른 은행 또는 저축조합에 가지고 있는 예금잔고를 청구하도록 한 권고 또는 권한을 포함),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송금환(money order),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용역대전(payment for services), 배당금(payment for dividend) 또는 물품구입대금(payment for purchase)의 지급 등을 포함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행된 기타 수표</p> <p>(5) FDIC의 이사회가 통화감독관(Comptroller of Currency)과, 저축기관감독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p>

	the Federal Reserve System)와의 협의 하에 통상적인 예금채무(deposit liability)라고 판정하여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은행 또는 저축조합의 기타 채무
--	--

주 : 미국 FDIA 3조 (l)항의 예금의 정의를 해석한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연구 10월호의 「전자화폐의 예금보험 적용가능성」연구를 참조함.

한편, 예금과 대응하는 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대출 및 여신 제공 서비스에 관하여 미국의 금융관련법은 이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2) 은행업의 개념

미국에서는 예금과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예금 및 여신 등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영위할 수 있는 허가요건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업자는 예금 및 여신 관련 금융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금관련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⁶⁸⁾.

기본적인 미국 은행업의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연방법⁶⁹⁾ 미국

실질적인 Title 12 Banks and Banking 의 은행에 관련한 조항에 국법은행(national banks)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국법은행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권한으로 ‘어음 등의 채무증서의 할인, 예금의 수취, 통화 등에 대한 교환 및 매매, 대출, 제한된 범위의 채권업무 등’을 열거하여 나열하고 있다. 한편 동법에서는 위에 열거된 국법은행이 행할 수 있

67) 신탁자금(escrow fund)이란 계약에 의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제3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금

68)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Rate Control Act of 1978 Sec. 202 1. the term ‘depository institution’ means a commercial bank, a savings bank, a trust company, a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a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 a homestead association, a cooperative bank, an industrial bank, or a credit union.

69) US code Ch. 12 (Banks and Banking) 24.

는 허용 업무와 더불어 허용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은행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겸업화의 영향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했으며 이를 위한 금융제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했다. 결국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 업무영역의 확대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동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시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3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A) 본원적 금융업무 또는 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와 (B) 본원적 금융업무에 보완적인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예금기관과 금융시스템에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원적 금융업무와 보완적인 금융업무의 범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일부 증권업무(Broker-Dealer)와 보험대리점으로서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 증권

1) 증권상품의 개념

미국의 증권상품 관련 법규는 증권관련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하여 제정된 증권법(Securities Act)과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그리고 파생상품관련 감독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의하여 제정된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증권 상품인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법에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상품거래소법에서 각각 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가) 증권(security)

미국 1933년 증권법상 증권에 대한 정의에 속하는 증권으로는 노트(note), 주식, 자기주식(treasury stock), 증권선물, 담보채권(bond), 담보채권(debenture), 채무증서 등과 추상적 개념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도 포함하고 있다. 이중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은 1946년 Howey 사건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금전을 오로지 받기 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의 기대를 가지는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거래”로 판시한 바 있다. 개념적으로는 투자성보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나) 파생상품

증권선물은 증권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서 규제하고 있다. 규제대상 상품선 물은 ‘상품의 미래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판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좌, 합의 (옵션, 콜, 풋 등 포함) 및 거래’로 정의함에 따라 날씨파생도 상품선물의 일 종에 해당하나, 상품거래법상에서 날씨파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규제없이 날씨파생을 취급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제정한 SFAS 133(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3)에 따르고 있으나, 장외파생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성격에 따라 보험 또는 파생 상품회계처리를 실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전미보험감독위원회(NAIC) 백서의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요구는 날씨파생상 품과 기타 비보험 유사상품들은 보험상품으로 분류되고 규제되는 것을 회피 하기 위하여 비보험상품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주로 기온의 변화로 인한 위 험을 담보(heating and cooling degree days)하는 것으로서 날씨파생상품 소 비자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으로 분류되고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증권업의 개념

미국 증권관련 법규는 증권, 파생상품과 관련한 금융업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증권 및 파생상품의 추상적인 정의 이 외에는 금융업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포 괄주의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금융업의 경우 자유로운 상호 경영이 가능하며 부수적인 업무의 경영도 원칙적으로 가

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업, 증권업, 은행업간의 고유업무에 대한 상호 경영 금지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⁷⁰⁾.

미국 증권관련 법률에서는 증권의 중개업(broker), 증권의 자기매매업(dealer), 증권과 관련된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er), 증권의 인수업(underwriter) 등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해야 영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법은 증권의 중개업과 자기매매업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⁷¹⁾. 동법에서는 중개업에 대하여 '타인 계좌를 위하여 증권거래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매매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를 위하여 증권의 매매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에서는 증권과 관련된 투자자문업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²⁾. 증권의 인수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인수업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영업행위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³⁾.

미국 파생상품과 관련한 법규에서는 파생상품상업(future commission merchant), 파생상품중개업, 파생상품 자기매매업(trader), 파생상품자문업(commodity trading advisor),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운용업(commodity pool operator) 등의 경우에 감독당국에 등록을 함으로서 영위가 가능한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업의 경우에는 상품거래소법에 의하여 감독기구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파생상품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그

70)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 의하면 증권업과 은행업의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경영금지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경영금지 원칙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보험법에서도 다른 금융업에 대한 경영을 금지하고 있어 결국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은 상호경영 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71) 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15(a)(1).

72) Investment Advisers Act, Section 3(a)., Investment Advisers Act, Section 2(a)(11).

73) Securities Act, Section 2(11).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금융상품 규제법률은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다. 금융서비스시장법은 보험,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통합금융법률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을 규제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투자물(Investment of a specified kind)'로 금융상품을 정의한다. '투자물'이란 모든 자산, 경제적 권리, 이익권리 등을 통칭하는 개념⁷⁴⁾으로서 재무부령(Treasury Order)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⁷⁵⁾.

가. 보험상품의 개념

통합금융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중 보험계약(contract of insurance)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부속법령인 규제대상행위령(RAO)에서는 세부보험계약을 일반보험계약(contracts of general insurance) 과 장기보험계약(contracts of long-term insurance)으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⁷⁶⁾.

74) "Investment includes any asset, right, or interest"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2.)

75) 특정투자물(specified investments)을 deposits, contracts of insurance, Shares etc., 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 Government and public securities, instruments giving entitlement to investments, Certificates representing certain securities,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rights under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options, futures, contracts for differences etc., Lloyd's syndicate capacity and syndicate membership, funeral plan contracts, regulated mortgage contracts, Rights to or interests in investments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76) FSMA Schedule 2 Part II. Investments, RAO Part III. Specified Investments, RAO Schedule 1

<표 V-4> 영국 규제대상행위령에서의 보험계약 분류

	분 류
손해보험계약	상해, 질병, 육상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우송중인 화물, 화재 및 자연재해, 자산 손해,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항공기 손해배상책임, 선박 손해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 신용, 보증, 기타 금전 손실, 법률비용, assistance
장기보험계약	생명 및 연금, 결혼 및 출산, 링크 장기보험, 무기한 건강보험, Tontine연금, 자금상환계약, 연금기금운영 , 단체보험, 사회보험 등

규제대상행위령 제3조에서는 보험계약을 정의하면서 일반보험계약과 장기보험계약에 특별히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보험으로 보증보험, 토티, 자본상환계약 또는 연기금관리계약, 생존연금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증보험은 은행업무를 하지 않는 자에 의한 것으로 계약체결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에만 이행되지 않고 1회이상의 보험료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 그리고 생존연금(contracts to pay annuities on human life)은 생명보험(contracts on human life)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망률의 사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은행상품의 개념

은행상품의 경우에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의 규제대상행위령(RAO)에서 예금의 수취(accepting deposit)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예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과 함께 은행여신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대출에 대한 정의는 금융서비스시장법 또는 규제대상행위령에도 없어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예금의 수취 행위라는 것은 ‘예금으로 수취된 금전의 대출’ 또는 ‘예금을 수령한 자의 기타 다른 행위가 예금으로 수취된 금전의 원금이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융행위’를 수반하게 될 경우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예금의 수취 행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예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금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⁷⁷⁾.

동법에서 예금은 이자나 프리미엄의 존재여부, 요구불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의 여부, 예금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에게 상환(repaid)될 것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금이 재화(property), 서비스(services), 담보제공(giving of security)을 이유로 지급된 금전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대출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일반적인 여신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FSA의 지침서 용어집(glossary to the FSA's handbook)에서 신용(credit)의 개념에 대하여 대출 및 지급보증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V-5>와 같다.

<표 V-5> FSA의 지침서의 신용의 개념

	내 용
대출	- 대출, 대출의 거치상환, 대출의 이자, 보증, 배상, 기타 어음, 신용의 성질을 띠고 있는 금융수단(단, 보험계약과 관계된 것은 제외)
지급보증	- 만기 때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불능(파산 이외의 기타 이유로 인한) 또는 파산으로 인한 채무의 지급불능이 발생할 경우의 손실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계약

다. 증권상품의 개념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을 따로 구분

77) RAO Part II. Specified Activities Ch II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투자물의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따로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 언급된 투자물 가운데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에는 주식, 부채증서, 국공채, 투자권리증서, 예탁증서, 집합투자기구권(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관리연금권(rights under a stakeholder pension scheme), 옵션, 선물, 차익거래계약이 있다.

주식(shares etc.)은 기본적으로 법인기업 또는 비법인기업 자본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부채증서(instruments creating or acknowledging indebtedness)는 국공채로 발행된 경우를 제외한 채무증서(debentures), 무상환사채(debenture stock), 대부주식(loan stock), 채권(bond),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s of deposit), 기타 채무를 표시하는 모든 증서 등을 포함한다고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국공채(government and public securities)는 동법에 명시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발행되고 보증된 대출, 채권, 증권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투자권리증서(instrument giving entitlement to investment)는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로서 일종의 워런트(warrant)를 의미한다. 예탁증서(certificates representing securities)는 계약적 권리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증서이다.

옵션(option)은 증권 혹은 계약적 투자 권리, 영국 또는 기타 국가의 통화, 금 또는 은 등의 재산에 대한 획득이나 처분 권리이며, 선물(future)은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에 동의한 가격으로 미래에 재화의 판매 또는 재산의 처분을 약정한 거래에 대한 권리이다. 차익거래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s etc.)은 차익거래계약의 권리 또는 재산의 가치나 지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라. 금융업의 개념

영국의 각 금융업에 대한 업무범위 규제는 완전한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은 감독기구인 FSA에 의하여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 이외에 업무범위를 제한

하는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범위의 선택이 가능하다.

영국은 겸업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업의 개념이 개별 상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상품의 개념이 존재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금융업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품 중심이 아닌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 '투자물' 개념을 기준으로 금융업을 정립하고 있다.

감독기구의 인가(authorization)를 통하여 규제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법적 금융업의 개념은 다음 <표 V-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⁷⁸⁾.

<표 V-6> 영국 금융업의 분류

	내 용
투자물 중개업	- 중개업자로서 투자물 또는 증권인 인수 및 매매거래를 행하는 업무
투자물 자기매매업	- 투자물 또는 증권인 인수 및 매매거래를 행하는 업무
투자물 거래주선업	- 특정한 투자물의 인수를 원하는 타인을 연결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
투자물 보관 및 관리업	- 타인의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집합투자기구 관련업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영위와 관련된 업무 - 인가된 투자신용기구의 업무 - 개방형 투자회사의 단독 대표자 또는 보관자로서의 활동 업무
투자자문업	- 투자물의 인수 또는 매매거래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
투자일임업	- 타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 및 관련된 업무
예금수취업	- 예금의 수취와 관련된 업무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업무

78)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3. 일본

가. 보험분야

일본의 경우 보험상품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법과 보험업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상법에서 보험계약이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⁷⁹⁾.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에 대해서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일정한 우연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 또는 기타의 보험의 인수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⁸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의 종류를 생명보험(생명보험 및 연금), 손해보험(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책임보험 등), 제3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금에 대해서는 생존에 대한 정액보상으로 사망을 또는 생존률에 상관없이 모든 연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증증권업무는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무중 보험수리에 의거하여 당해 대가를 결정하고 준비금을 적립하며 재보험에 의한 위험의 분산을 행하는 것 기타 보험에 고유한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보증증권업무에 의한 보증은 보험의 인수로 간주하고 보증에 관한 대가는 보험료로 간주한다.

특히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동일주체에 의한 면허취득을 금지함으로써 겸영금지 원칙을 취하고 있다⁸¹⁾.

79) 일본 상법 제629조, 제674조

80) 일본 보험업법 제2~5조

81)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3항

<표 V-7> 일본의 생·손보 업무영역 구분

업무영역	생보	손보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한 정액보상(여명이 일정기간 이내라고 의사에 의해 진단된 신체의 상태를 포함)	○	×
다음 사항에 대한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		
1. 질병에 걸린 것		
2. 상해를 입은 것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사람의 상태	○	○
3. 상해를 입은 것을 직접원인으로 하는 사람의 사망		
4. 1 또는 2에 유사한 것		
5. 1,2,4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것		
일정한 우연의 사고의 손해에 대한 실손보상	×	○

주 : 1) 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하여는 질병사망을 예외적으로 허용
(상기 분야조정안이 제시된 65년 시점에서 기판매된 상품으로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인정)

2) 생명보험의 경우 상해사망만을 보장하는 보험은 불허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⁸²⁾.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에는 다른 보험회사 및 다른 금융업자의 업무의 대리 및 대행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자의 대출업무의 대행도 가능하며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보증채 등의 인수업무도 가능하다. 또한 유가증권 사모의 취급, 금융선물거래 및 금융선물거래 등의 수탁 및 금융 등 파생거래, 금융 등 파생거래의 매개, 취급 또는 대리업무도 부수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편으로 신탁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인수를 행하는 업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³⁾.

나. 은행분야

일본의 은행법에서는 예금에 대한 정의를 ‘정기적금’과 ‘정기적금 등’의 두 가지에 형태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정기적금’이란 ‘기한을 정해 일정 금액의 급부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고, 정기 또는 일정한 기간에 몇 차례에

82) 보험업법 제98조

83) 보험업법 제99조 제3항

걸쳐 받아들이는 금전'을 의미한다. 또한 '정기적금 등'은 '정기적금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중도 또는 만료 시에 일정한 금액의 급부를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받는 부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법상에서의 예금의 정의와 더불어 동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은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은행업에 대한 정의도 따로 규정하여 은행업에 대한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은행업이란 '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취급과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외환거래를 영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⁸⁴⁾.

84) 일본 은행법 제2조

<표 V-8> 일본의 은행영업의 범위

업 무	비 고
-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의 취급	
-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 외환거래	
- 국채, 지방채 혹은 정부 보증채의 인수 또는 해당 인수와 관련되는 국채 등의 모집 취급	
- 금전 채권의 취득 또는 양도	- 양도성 예금 증서 그 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증서 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
- 특정 목적회사가 발행하는 특정 사채와 이에 준하 는 유가증권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인수	
- 단기사채 등의 취득 또는 양도	
- 유가증권의 사모 취급	
- 지방채 또는 사채 그 외의 채권의 모집 또는 관리 의 수탁	
- 은행 외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의 대리 또는 매개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
- 지방공공단체, 회사 등의 금전의 수납 외에 금전 과 관련되는 사무 취급	
- 유가증권, 귀금속 그 외의 물품의 보호 보관	
- 대체업	
- 환전	
- 거래소 금융선물거래 등	
- 금융선물거래의 수탁 등	
- 금리, 통화의 가격, 상품의 가격 그 외의 지표의 수치로서 미리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수치와 장래 의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현실의 해당 지표의 수치의 차이에 근거해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 속하는 거래 또는 이것에 유사하는 거래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
- 금융 등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 대리	
- 유가증권 매장 파생상품 거래	
- 유가증권 매장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 대리	

다. 증권분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감독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을 통합하여 만든 법률로써 주식과 채권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각종 금융상품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적용대상인 금융상품 각각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2조 24항에 의하면 유가증권, 예금계약에 근거하는 채권 그 외의 권리 또는 해당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혹은 증서로 법령으로 정한 것, 통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상품거래소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품을 제외),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 거래소가 시장 파생상품거래를 원활화 하기 위해 이율·상환기한 이외의 조건을 표준화 하여 설정한 표준물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새로이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유가증권의 종류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정의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표 V-9>와 같다⁸⁵⁾.

85)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

<표 V-9> 일본 금융관련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류

1. 국채
2. 지방채
3. 특별한 법률에 의해 법인의 발행하는 채권
4.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 사채권
5. 사채권(상호회사의 사채권을 포함)
6.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발행하는 출자 증권
7. 협동 조직 금융기관의 우선 출자에 관한 법률 (우선 출자법)에 규정하는 우선 출자 증권
8.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우선 출자 증권 또는 신우선 출자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9. 주권 또는 신주 예약권 증권
10. 투자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투자신탁 또는 외국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1. 투자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투자 증권 혹은 투자법인 채권 또는 외국 투자 증권
12.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13.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 목적 신탁의 수익증권
14. 신탁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증권 발행 신탁의 수익증권
15.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 가운데,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저당증권법에서 규정하는 저당증권
17. 외국 또는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제1호에서 제9호 또는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성질을 가지는 것
18.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의 대출 채권을 신탁 하는 신탁의 수익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것
19.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정한 기준·방법에 따른 제21항 제3호의 거래와 관련된 권리, 외국금융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제21항 제3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된 권리, 금융상품시장 및 외국금융상품시장에 의하지 않는 제22항 제3호·4호의 거래와 관련된 권리(옵션)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 전 각 호의 증권 또는 증서의 예약을 받은 자가 해당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된 국가 이외에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 해당 예약을 받은 증권 또는 증서와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것
21.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증권 또는 증서

한편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가격·이율은 물론 기상의 관측에 따른 수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내지 사회경제의 상황에 관한 통계의 수치로 산출되는 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4. 호주

호주의 금융관련법의 통합과정은 1996년 재무성의 주도로 금융시스템조사위원회(Financial System Inquiry, FSI)가 결성된 후 5년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1997년에 금융시스템 조사보고서(Wallis Report)가 제시되었고,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사법 및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기초로 만들어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FSRA)이 2001년 9월 의회를 통과하여 200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은 기존 회사법의 제7장과 제8장을 구성하던 유가증권 및 선물시장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 소매참여자(retail participants) 및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금융시장 혹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한다.

가. 금융상품의 정의⁸⁶⁾

호주에서는 금융상품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상품을 통하여 또는 해당상품의 인수를 통하여 투자(making a financial investment), 위험관리(managing financial risk) 또는 비현금지급(making non-cash payments) 중 하나 이상을 하는 것을 금융상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대출과 같은 신용상품은 금융상품의 범위에 제외하고 있다.

86)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3A조 763B조 763C조 763D조

또한 금융상품을 3단계로 분류하는데 위와 같은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분류하고 일반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 열거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명시적 포함조항(specific inclusion)을 둘 수 있으며, 일반적 정의와 명시적 포함에 해당하지만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규정(specific exclusion)을 두고 있다.

투자상품(financial investment)이란 투자자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납부금을 다른 주체(another person)에게 지급하고 ① 상대방은 투자자에게 금전적 회수(financial return) 또는 다른 급부를 생성해 주기 위하여 납부금을 이용하고, ② 투자자는 다른 주체가 납부금을 자기를 위한 금전적 회수 또는 다른 급부 생성(실제 이익 또는 급부의 발생이 없더라도)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③ 다른 주체도 그 납부금이 투자자의 금전적 회수 또는 다른 급부 생성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을 때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회수금 또는 급부 생성을 위하여 납부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일일단위의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한다. 투자사례로는 한 사람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그 사람에게 발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특정회사에 지급하는 것 또는 한 사람이 투자계획(scheme)에 대해 책임있는 주체로부터 등록된 투자계획에서의 이자 획득을 위하여 금전을 납부하는 것 등이 있고, 투자수익을 생성할 수는 있더라도 부동산과 지금을 구입하는 것과 자기주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자에게 금전을 주는 것 등은 금융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크(financial risk)의 관리는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특정인에게 일어나는 금전적 결과(financial consequences)를 관리하거나 회수금 또는 비용(가격과 이자율을 포함)의 변동 또는 가치변동에 대한 금전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선물거래의 구입 또는 통화스왑의 체결에 의하여 책임을 헤지(hedge)하는 행위는 금융위험관리에 해당되고 안전관리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금융위험관리가 아니다.

비현금지급이란 채권(notes) 또는 화폐(coins) 형태의 내국환 또는 외국환의 물리적 인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급되어야 할 원인행위를 하

는 경우를 말한다. 예금계좌의 차변에 대하여 어떤 금융수단으로 지급하는 것, 수표사용에 대하여 어떤 금융수단으로 지급하는 것, 스마트카드와 같이 1998 지급제도규제법(the Payment System (Regulation) Act 1998)의 범위 내에서 구입된 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것 또는 여행자수표로 지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지급수단으로 지급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뿐인 경우와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관련된 사람이 많아 해당규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급수단 또는 그 유사종류는 비지급수단이 아니며, 금융회사의 신용장,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발행한 수표 또는 금융회사에 의한 보증장에 의한 지급도 비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런 것들은 금융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일반적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 열거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명시적 포함조항(specific inclusion)에서는 유가증권(security), 등록투자계획과 관련한 투자계획의 이자, 투자계획의 이자에 대한 법적 또는 공평한 권리 또는 이자, 증권발행을 통하여 이자 또는 권리를 획득하는 옵션, 파생상품, 1995년 생명보험법(the Life Insurance Insurance Act 1995)의 생명보험계약 또는 감채기금증권이 아닌 보험계약(손해보험을 의미하며 회원을 위하여 조합이 급부를 제공하거나 1995년 생명보험법 11(3)(c)에 규정한 급부, 연금 또는 지급을 제공하는 것, 장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손해보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인 생명보험 및 감채기금증권(생명보험을 의미하며 회원을 위하여 조합이 급부를 제공하거나 1995년 생명보험법 11(3)(c)에 규정한 급부, 연금 또는 지급을 제공하는 것, 장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이 아닌 생명보험 및 감채기금증권(생명보험을 의미하며 회원을 위하여 조합이 급부를 제공하거나 1995년 생명보험법 11(3)(c)에 규정한 급부, 연금 또는 지급을 제공하는 것, 장례급부를 제공하는 것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1993년 노령연금산업감독법(the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에서 말하는 노령연금이자(superannuation interest), RSA(retirement saving accounts), 은행법상 예금(deposit-taking facility), 정부의 담보, 주식 또는 채권, 외환,

등이 포함된다. 보험계약에 대한 명시적 포함은 일부 규정이 보험의 방식이 아니라도 통상 보험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과 통상 보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관련된 규정에 보험규정을 포함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금융상품(specific exclusions)에는 적용제외 유가증권(excluded security), 관련기업에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해당기업에 의한 보증, 국가건강법(the National Health Act 1953)에 의한 건강보험, 연방(Commonwealth)이 제공하는 보험, 수출금융보험공사에 의한 보험, 재보험, 신용수단(credit facility) 등이 해당된다.

나. 보험분야

1) 보험상품의 정의

가) 보험상품

보험은 금융상품의 분류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FSRA는 보험상품으로 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생명보험(investment life insurance product)을 열거하고 있다. 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생명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의 일부가 보통의 보험 방법과 다르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과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관련된 보험의 규정을 포함한 계약을 보험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⁸⁷⁾.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법에서 인정된 생명보험증권(life policy)이나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⁸⁸⁾이 아닌 보험계약을 의미하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법에서 인정된 생명보험증권이나 감채기금증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이 아닌 생명보험증권이나 감채기금증권을 의미한다⁸⁹⁾.

87)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4A(2)조

88)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은 발행회사가 하나 이상의 특정일에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금전의 지급과 보험료의 지급 모두가 그 증권이 발행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에 의존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증권⁹⁰⁾에는 ① 사람의 사망 또는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는 우발사고의 발생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②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는 어떤 조건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는 어떤 조건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사람생명의 종료 또는 계속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조건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다만, 이 구문의 목적을 위한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장애증권(continuous disability policy), 투자계좌계약(investment account contract)⁹¹⁾에 해당하는 계약(보험계약 여부에 상관없다), 투자연계계약(investment-linked contract)⁹²⁾에 해당하는 계약 등이 속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조건 중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오로지 상해사망 또는 특정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생명보험계약이 아니다.

또한 생명보험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⁹³⁾로는 ① 동업자조직이 그들의 회원 및 피부양인에 대한 급부와 관련한 사업, ② 근로관련법령(Workplace Relations Act)에서 인정하는 피고용인단체의 회원 및 피부양인에 대한 급부와 관련한 사업, ③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 또는 양자가 설립한 조직만을 통하여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 또는 양자에 의해 제공되는 피고용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노령연금 급부금, 연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획 또는 계

89)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4A(d), (e), (f)조

90) 호주 생명보험법 제9조.

91) 투자계좌계약(investment account contract)이란 ① i) 사망 또는, ii) 특정일 또는 다수의 특정일이나 특정일전 사망 또는 다수의 특정일의 마지막날에 지급되는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과 ② i) 계약에 의한 운영계좌 또는 ii) 계약에 의해 보장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단위와 관련하여 계산되는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 및 ③ 증가되는 계좌를 제공하는 계약(예를들면 납부보험료 또는 이자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 납부자의 책임에 의한 해약금액 또는 계약에 의한 해약수수료 금액이외의 금액에 의해 감액되는 계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계좌계약이 아니다.

92) 투자연계계약(investment-linked contract)이란 ① 급부를 받는 사람의 특정종류 또는 그룹의 자산의 시장가치와 관련된 가치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급부의 지급액이 본래의 목적인 계약과 ② i) 사망 또는, ii) 특정일 또는 다수의 특정일이나 특정일전 사망 또는 다수의 특정일의 마지막날에 지급되는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93) 호주 생명보험법 제11조.

약(scheme or arrangement)과 관련된 사업, ④ 호주내에서 불특정인이 아닌 피고용인에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의 발행, 그 책임의 인수에 해당하는 사업, ⑤ 생명보험회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i) 장례,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지급(그러한 의식과 관련한 물품제공 여부에 상관없이)을 구성하는 급부 또는 ii)장례,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소요비용 및 부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 등이 있다.

노령연금사업도 생명보험업에 속하며, 노령연금상품(superannuation product)이란 노령연금산업감독법(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의 규제를 받는 상품이며 그 종류는 운영기금에 따라 구분된다.

<표 V-10> 호주 노령연금상품의 종류

종 류	특징
regulated superannuation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신탁자는 법률상의 회사이거나 기금은 연금형태여야 함. - 신탁자는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법률상 회사이어야 하고, 기본규칙(governing rule)에 기금의 중요목적이 노령연금에 있음을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신탁자는 APRA나 법에 의해 특정된 기관에 의해 지정되어야 함.
Approved Deposit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기금이며, - 법률상의 회사인 RSE licensee에 의해 운영되며, - 특정의 공인된 목적을 위해 운영됨.
Pooled Superannuation Tru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 회사가 신탁자인 계약형투자신탁(unit trust) - 법규상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형투자신탁.

또 다른 연금상품으로 퇴직저축계좌법(Retirement Savings Account Act)을 충족하는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상품⁹⁴⁾으로, RSA상

94)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764A(h)조

품⁹⁵⁾은 계좌 혹은 계좌의 개설이나 계약의 체결이 퇴직저축계좌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좌 혹은 계약·자본보장(capital guaranteed)계좌으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거나 1997년 7월 1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이나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2) 보험업의 정의

호주의 보험규제법률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하여 존재한다.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법(insurance act 1973)⁹⁶⁾은 보험업을 “보험(재보험 포함)의 방법으로 특정사건의 발생과 관련한 어떤 손해 또는 손상(손상 또는 보상을 지급할 책임을 포함한다)과 관련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과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생명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⁹⁷⁾에서 생명보험업(life insurance business)이란 ① 생명보험증권의 발행, ② 감채기금증권의 발행, ③ 생명보험증권에서의 책임에 대한 인수, ④ 감채기금증권에서의 책임에 대한 인수와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중 일부 또는 모두로 구성된다. 보험부수업무에 대한 의심을 회피하거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보험본업과 관련된 업무는 법정펀드의 자산을 투자, 관리하는 것과 연관된 업무를 포함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다. 은행 분야

1) 은행상품의 정의

예금은 금융서비스개혁법의 금융상품 분류에 있어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RSA상품 이외의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Banking Act)을 충족하는 공인예금수취기관(ADI :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e)에 의한 예금

95) 호주 퇴직연금계좌법 제8조

96) 호주 보험법(insurance act) 제3조.

97) 호주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제11조.

취급기관(deposit-taking facility)을 의미⁹⁸⁾한다. 여기서 공인예금수취기관은 은행법에서 인가받은 회사를 말하는데 공인예금수취기관에는 은행(국영은행 포함),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을 포함하며 이들은 동일한 Prudential Standards를 적용받으나, “은행” “건축조합”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대출과 같은 신용상품은 금융서비스개혁법 중 금융상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출은 FSRA에서 금융상품에서 제외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법규를 충족하는 여신(credit), Payment System and Netting Act를 충족하는 공인된 RTGS 시스템 또는 최종위치(position)의 확정과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전 그리고 Payment System and Netting Act를 충족하는 공인된 RTGS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위한 수단(facility)에 의해 보장되는 신용을 통해 지급한다면 그 비현금지급수단을 대출이라고 본다.

2) 은행업의 정의⁹⁹⁾

헌법(Constitution)¹⁰⁰⁾에서 설명한 은행업 또는 헌법¹⁰¹⁾을 적용받는 회사가 운영하는 업 그리고 일정범위에 있어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본 정의의 취지에 맞게 법에서 정한 다른 금융행위를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라. 증권분야

1) 증권상품의 정의

가) 증권¹⁰²⁾

98)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4A(i)조

99) 호주 은행법 제5조

100) 국립은행을 제외한 은행, 해당 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주립은행, 은행법인, 유가증권 발행기관

101) 외국회사, 연방법을 충족하는 형태의 금융회사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에 의하면 증권이란 ‘주식·채권·주식과 채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 또는 이익 및 증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을 의미한다. 또한 투자상품¹⁰³⁾(managed investment product)도 증권에 포함되는데, 투자상품이란 ‘등록된 투자관리기관을 통한 이익, 법적 혹은 그와 동등한 권리 또는 이익·앞의 이익 또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옵션과 회사법(Corporation Act) 601ED(1)¹⁰⁴⁾요건의 하나 이상을 충족한, 미등록 투자관리기관을 통한 이익·법적 혹은 그와 동등한 권리 또는 이익·앞의 이익 또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을 의미한다.

나) 파생상품¹⁰⁵⁾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에서 파생상품은 일정한 조건이나 특징을 갖는 계약을 의미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이란 첫째,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미래 시점에 특정한 대가(consideration)의 지급을 요청받는다든 것, 둘째 미래 시점은 본 규정에서 설명하는 기간보다 짧지 않아야 하며, 자산·이자율과 환율 등의 비율(rate)·지수(index)·상품(commodity)과 같은 요소를 통해 대가의 총액 혹은 계약의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파생상품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파생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으로는 한쪽 상대방이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 실물이 이전되기 보다는 상채나 현금결제를 통해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는 계약, 보통의 시장이나 인가받은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계약과 다른 계약을 상쇄시키는 판매자의 의무를 인정하는 계약, 미래서비스의 제공 계약 등 파생상품이 아닌 계약,

102)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1A조

103)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4A(1)(b)조, 제764A(1)(ba)조

104) 20명 이상의 직원(member), 투자관리기관의 발기(發起)시 법률상 인격(person) 또는 인격의 연합에 의할 것.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각각 ASIC에 등록할 것.

105)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1D조

기타 본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 등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마. 기타금융상품

1) 외국환 거래¹⁰⁶⁾

통화를 사고팔거나, 어떤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는 계약으로 파생상품계약, 즉각적인 대금결제를 위해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외국환계약은 금융상품으로써 외국환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다.

2) 비현금지급수단¹⁰⁷⁾

비현금지급수단이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지폐나 동전이 아닌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데 금융서비스개혁법 763D조는 비현금지급수단의 종류로 직불카드(debit card)·수표(chèque)·payment facility(스마트카드와 같이 Payment System(Regulation) Act를 충족하는 지급수단)·여행자 수표(traveller's cheque) 등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인에만 해당하는 지급수단, 본 항목의 범위 외의 facility로서 특정하게 규정된 facility, 금융기관의 신용장, 금융기관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표,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은 비현금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6)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1A조, 제761A(k)조

107)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제763D조

VI. 보험상품 정의 및 분류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1. 금융상품의 법률체계 개선

금융상품의 정의 문제는 규제측면에서 규제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과 역사적으로 취급해 온 개별금융회사별 유사기능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잣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상품을 정의하여 일반소비자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규제법률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범위의 확정을 위해서 행정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류와 해석이 어렵거나 중첩성이 있는 분야는 공동 취급영역으로 하거나 금융회사별 취급방식만 달리하는 유사금융상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영역의 업무에 대한 겸업의 허용이나 상품정의에도 불구하고 특별규정으로 제한된 상품 또는 업무를 특별히 허용하는 등 금융상품 정의에 대한 보완 또는 보충적 체계도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포괄적 정의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적 범위를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규제대상 범위를 자세히 나열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유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및 은행법과 비교하면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의 영역은 기관중심 실질적 감독주의하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이해하고 열거된 구체적 해당금융상품만으로 해석을 한다고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향후 열거되지 않는 신상품개발에서 중첩성이 있는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우선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에서는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2002년 홍콩과 2001년 싱가포르의 증권선물개혁법 등이 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도 당초 투자서비스법으로 출발할 때에는 투자성보험과 은행상품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제정법률에서는 보험과 은행상품을 배제하고 해당법률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홍콩 및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에 대한 통합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험은 적용배제되었다.

과거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적용대상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장기보험계약, 그리고 집합투자 등 ‘투자성’이 강한 ‘투자상품’ 혹은 ‘자본시장상품’으로 정의하여 생명보험의 투자성상품을 포함한 바 있으나, 규제상품 구분의 문제, 규제원칙의 불균등성 문제 및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 때문에 2000년 완전금융통합법 체계로 전환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완전통합금융법률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되는 경우 규제차익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통합금융법률 체계로 전환되기 전에는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보험과 은행을 배제하고, 해당법률에서 투자성상품에 대한 필요규제를 자본시장통합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에도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괄적 정의 개념을 보험업법에 신설하고 현행 취급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구체적 보험상품을 자세히 열거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이 한정적 열거주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대상 여부 및 금융상품 분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 해석이 불가한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규제당국의 균형있는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분류를 관장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규제체계가 될 것이다.

보험산업 내에서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유사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업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적용배제조항을 일괄 삭제한 후 보험업법에 적정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내 보험법체계는 보험업법에 보험계약법도 포함하는 체계이고 보험업법이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법률체계면에서는 보험업법에

서 보험상품의 정의를 상법의 보험계약의 정의 또는 보험자의 책임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을 정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정의가 보험상거래를 규정하는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와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상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다만, 상법은 보험업법에 비하여 법개정이 비탄력적인 관계로 급변하는 보험시장의 변화와 보험상품의 변화를 즉시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상품의 정의에 대한 검토를 계기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보험업법에서 일관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상법의 보험계약법의 상당부분을 보험업법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상법상 서비스급부 등 기타의 급부를 상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이 서비스 급부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보험업법에서 보험정책 및 감독측면에서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도 서비스 급부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법 개정을 위하여 보험의 의의와 생명보험계약의 현물급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¹⁰⁸⁾.

생명보험계약의 현물급부 허용은 개호서비스의 제공, 노인홈타운의 입주권 급부 등의 현실적 허용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급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것, ② 보험금상당의 것, ③ 보험금수취와 선택가능한 것, ④ 범용성 및 대체성이 있는 것, ⑤ 가격변동리스크의 파악이 가능한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논점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보험상품의 정의를 신설할 때에 서비스급부를 폭 넓게 허용할 경우 보험계약법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서비스급부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계약자보호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08) 金融廳, 「保険法改正への 對應について(主要論点の 検討①)」, 平成19年11月22日.

2.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신설

보험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신설하는 목적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취지 및 목적과 다르지 않다.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 출현하더라도 투자성 개념을 기준으로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규제공백을 제거하여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 이유이다.

이런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보험규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의 열거주의 하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보험신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보험상품인지에 대하여 규제당국에 사전적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험규제의 대상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가 시도하였다¹⁰⁹⁾. 보험회사의 업무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부수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험법상 보험의 고유업무를 “보험의 인수·운영”으로 정의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취급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의 방안은 그 당시의 시대적 현실과 보고서 목적에는 부합하였지만 이미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좀 더 진전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의 인수·운영’에서 보험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 규정과 동일수준의 대응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볼 때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규제 대상을 협소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이나 급부반대 급부균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기적 보험상품은 보험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광의로 정의하는 경우 품질보증

109)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1차 보고서(종합본)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1997. 4., p. 17 및 p.351.

거래 또는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까지 보험상품이 되어 다른 산업 또는 금융업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보험상품을 정의하는 방법도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즉, 보험회사가 현재 고유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의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보험을 정의하는 최근의 추세는 리스크 전가(transfer of risk)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Keeton & Widiss(1988)가 주장했듯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모든 계약이 보험도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모든 보험상품이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대표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보험을 정의하고 보험회사가 현실적으로 취급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보험상품은 보험정의에 상관없이 보험상품으로 추가 열거하거나 보험정의에 속하더라도 보험고유의 상품이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겸업화 된 금융시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우선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방식은 핵심적 특성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후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부연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의 경우 보험계약의 포괄적 정의에 '우연한 사고'와 '보증계약'에 대하여 추가 설명적 규정을 하고 있다.

<표 IV-1> 미국 뉴욕주의 보험계약 포괄적 정의

근 거	내 용
보험계약의 포괄적정의 규정 및 관련 추가규정 (제11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이란, 보험사(insurer)인 일방의 당사자가 피보험자(insured) 또는 보험수익자(beneficiary)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우발적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a material interest which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happening of such event)를 그 사고 발생기 가지거나 가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benefit of pecuniary value)를 부여하는 의무를 지는 합의 또는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 우발적 사고(fortuitous event)는, 양 당사자의 지배의 범위를 완전히 또는 상당히 벗어난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렇다고 양사자가 인정한 발생 또는 비발생을 의미한다. - 보증계약(contract of warranty, guaranty or suretyship)이란, 보험사업을 본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보증인(warranty, guaranty or surety)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본다.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를 위한 핵심적 기능에 대해서는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최소한의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함으로써 취급 보험상품의 현상을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다. 미국 정부회계기구(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¹¹⁰⁾가 제시하는 보험계약의 핵심 요소는 위험전가와 위험분산이다. 피보험자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거나 보험회사가 큰 보험집단을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학술적 정의도 위험이전 특성에 집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정의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위험이전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는 ‘위험이전’ 요소만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안(제1안)과 투기적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손해보상성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제2안)을 제안한다. 규정형식은 2가지 방안 모두 상법상의 보험계

110) GAO, 「Definition of Insurance and Related Information」, February 23, 2006.

약을 참고하면서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 소비자의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 제 1 안 > - 위험이전 요소만 반영

“보험상품이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수수할 권리를 말한다.”

< 제 2 안 > - 위험이전 요소에 손해보상성 개념을 포함

“보험상품이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그 사고시점에서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불리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수수할 권리를 말한다.”

<제1안>은 폭넓은 개념으로 보험상품을 정의함에 따라 연금 및 파생상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보험상품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논란영역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부보험상품을 통해 현행 상법과 같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목적 또는 손해보상성 요건 등을 추가할 수 있어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고, 보험상품 정의의 명시적 포함 또는 제외 조항을 통하여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영역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안>의 경우 국제적 사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상법상 보험계약의 범위보다 보험상품의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고, ‘불리한 이해관계’의 해석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

따라서 <제1안>이 금융경업화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 금융상품 분류 또는 보험상품 분류체계에도 적합한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방안이라고 본다.

“불확정한 사고”에 대한 부연규정은 미국의 ‘우연한 사고’와 동일한 개념의 현행 상법상 용어로서 양 당사자중 일방의 지배를 벗어나서 발생했거나 발생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써 객관적 우연성이 아니라 주관적 우연성을 의미함을 분명히 할 수 있으므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의 범위에는 금전급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보상금액과 물품 및 서비스 등 기타의 급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추가 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세부 보험종류를 정의하면서 상해보험에 한하여 기타의 급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기타의 급부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증’기능은 다른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능면에서 보험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다른 보증과 구분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거래방식의 보험거래이고 보증주체가 보험회사인 것을 보증보험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열거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및 연금관련 규정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는 전통적 보험상품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중첩성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열거하고 있는 세부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열거하는 보험상품에 정의도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내용을 참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금상품 취급현황을 보면 생명보험회사 뿐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및 다른 금융기관들도 취급하는 기간확정형연금에 해당하는 세제적격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있고 생명보험상품의 하나로서 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가지 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상법상 보험계약의 정의는 ‘불확정한 사고 발생시 일정한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손해보상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생명보험업의 취급상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추가 규정의 필요성

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포괄적 보험상품의 정의가 신설되면 연금이 포괄적 정의에의 포함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첫째, 만약 보험상품 정의안 중 <제1안>과 같이 신설하게 된다면 사람의 생존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정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존여부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 또는 사망시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은 보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예금 또는 투자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존여부에 상관없는 확정기간연금과 세제적격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영위로 포함한다는 보완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상품 정의안 중 <제2안>과 같이 신설하게 되면 연금은 손해보상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험상품 정의에 포함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사망을 또는 생존율과 무관한 기간확정연금 포함)을 모두 포괄하는 연금상품의 정의와 함께 명시적 열거 보험상품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세제적격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취급도 보험업의 영위로 규정하여 보험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금을 정의할 때 일정기간의 정기적 지급(periodical payment)을 하는 모든 계약 또는 인명의 존속에 따라 일련의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어떤 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속 지급하는 계약을 모두 포함하고 포괄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열거함으로써 연금취급이 보험업 영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열거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표VI-2>과 같이 일반적인 전통적 보험상품 분류에 따라 열거하고 있으나, 최근 보험상품 정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신용보험, 날씨보험, 법률서비스보험 등은 열거하지 않아 한정적 열거주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VI-2> 현행 보험업법령에 열거된 보험상품 현황

구 분	보험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연금 보험(퇴직 보험 포함)을 제외한 보험	생명보험회사만 취급
	연금보험	노후 또는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퇴직시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기타생명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손해보험업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손해보험회사만 취급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항공기·육상운송물·인공위성 등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항공·운송보험은 보험종목 구분시 해상보험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증보험	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재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 기타의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보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술보험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구 분	보험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손해보험업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손해보험회사만 취급
	도난보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유리보험	유리가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동물보험	동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원자력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비용보험	상금, 상품, 소송비용, 기타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타 손해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제3보험업	상해보험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생명·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 가능
	질병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	
	간병보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기타제3보험	그 밖에 하부규정에서 정하는 보험	

주 : 해당보험상품의 내용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보험종목 구분기준』에 의함.

따라서 신용보험¹¹¹⁾, 날씨보험, 법률서비스보험 등을 열거하여 중첩성 논

111) 신용보험이란 여신제공자인 상인 및 그 밖의 자가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금전채무(debts)를 미지급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에는 부보된 금전채

란이 우려되는 보험상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규제 영역을 정확히 확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대체재로, 비보험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으로 신용보험에 대한 대체재로써 채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부채취소계약과의 혼란,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간의 상품구분 및 규제 필요성 논란, 서비스급부의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납 또는 할인계획으로서 간주된 상품인 법률서비스계획과의 혼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표VI-3> 보험업법령에 추가 열거가 필요한 보험상품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생명보험	신용 생명보험	신용공여자 또는 상품공급업자가 본업으로 제공한 상품 또는 대출 등 서비스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생명보험 담보사고에 한함)	신용파생 및 DCDS와의 혼란방지
손해보험 제3보험	신용 손해보험	신용공여자 또는 상품공급업자가 본업으로 제공한 상품 또는 대출 등 서비스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생명보험 담보사고에 한함)	신용파생 및 DCDS와의 혼란방지
	날씨보험	비우호적인(adverse) 날씨에 기인한 금전적 손실 또는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날씨파생과의 혼란 방지
	법률서비스보험 ¹¹²⁾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서비스 비용의 상환을 제공하는 보험	보험사고의 구분이 어려워 생존보사 모두 취급

무를 취득 및 처분하는 부대권한 및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금전채무를 징수하는 부대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험도 신용보험으로서 담보해서는 안 된다(미국 뉴욕주 보험법 제1113조).

112) 미국은 생명·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의 정의와 무관하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추가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고 근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상품이다.

<표VI-4> 다른 법률에 의거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상품	세제적격개 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축보험계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보험계약	생·손보사 모두 취급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생·손보사 모두 취급

4. 보험상품 정의관련 보완장치 마련

보험상품 정의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 또는 보충수단으로는 ① 보험상품 정의에 포함되지만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② 보험상품은 아니거나 명시적 적용제외하였지만 규제주체측면에서 보험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한적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 ③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겸업정책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험상품 포괄적 정의에 포함되지만 현재와 같이 보험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적용제외대상으로 회원중심의 보험단체, 소규모 공제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제 또는 보험단체 등을 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는 반드시 보험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명시적 적용배제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는 우체국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상품은 감독

일원화가 시급하고 판단된다. 그러나 규제실익이 적은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계 또는 소규모 공제와 기업복지플랜 및 서비스계약에 대하여 전면적 보험규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VI-5> 보험상품 정의에서 명시적 적용제외가 필요한 상품

구 분	해당상품명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유사보험	법을 근거가 있는 공제 기관	불특정 다수 대상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조합원 대상사업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또는 조합원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제한
	법을근거가 없는 소형공제기관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종목	조합원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제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
	국가	우체국 보험	생명보험	해당법률에서 보험업법 적용배제
사회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강제공영보험	일반적으로 보험업법 규율대상이 아님	
일반기업의 복지플랜 (①,③)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복지플랜의 담보내용중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지급, 재산손해 보상, 상해 및 질병보상 등	보험담보는 복지플랜금부중 일부이고 1기업내로 제한
기타서비스계약 운영주체 등 (①,③)	의료서비스계약		의료기관 등의 우연한 사고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계약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 서비스급부의 제공이지만, 본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
	Warranty계약		일반기업의 품질 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수리서비스 제공계약	
	Waiver계약		렌트차량의 손상 및 도난에 대한 구상포기 등 권리포기계약	

둘째,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거나 명시적 적용제외되었지만 제한적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로 캡티브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유동화회사를 규정하고 있고, 명시적으로는 적용제외되었지만 보험규제가 일부 필요한 분야로 비영리의료법인, 종업원복지기금 등에 대하여 보험감독권자에게 인허가 및 제한적 감독권¹¹³⁾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캡티브보험회사 등 자가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을 정의하면서 리스크 전가의 개념만 포함하며 리스크 결합의 개념이 빠짐으로서 제외된 리스크 결합의 보험조직에 대한 보험감독권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유동화회사는 보험이라기 보다는 보험계약의 유동화를 하는 것으로 보험은 아니지만 유동화에 대한 보험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다. 예를들면 유동화 대상보험계약의 범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제한 등의 법적 보완도 필요하며, 유동화계약의 모집에 대한 자격제한 등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셋째,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경영정책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충장치 마련에 대한 것이다. 현재 다른 금융업무 중 보험회사 본체경영을 허용한 업무로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함)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가 있다.

경영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업권별로 고유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유 업무라 하더라도 업권간 중첩성 논쟁이 심한 경우 겸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일본을 살펴보면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간의 중첩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파생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 적어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날씨파생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발행·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113) 보험회사에 비하여 완화된 보고 및 공시의무 부과, 거래의 공정기준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표VI-6>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규제가 필요한 분야

구 분	해당상품	해당상품 내용	비 고
캡티브 보험자	보험상품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이전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정의하였으나, - 캡티브는 리스크이전은 없지만 실질적 계열내 또는 동업자내 자회사 또는 회원을 상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리스크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험상품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국은 캡티브보험사 설립을 보험업법에서 규제
Viatical Settlement	Viatical Sett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내 사망예정 자의 사망보험계약 유동화 또는 - 노령의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유동화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유동화이지 보험은 아니지만 미국은 보험업법에서 규제
비영리의료 법인	의료비용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법 또는 협동조합법인법에 의거, 설립한 법인이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의료비용 보상, 치과비용 보상 등을 제공 	명시적으로 보험상품에서 제외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음 (미국)
종업원복지 기금	상해,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또는 연금 계약의 구입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 기업의 복지를 위해 - 직접 또는 수탁자를 통해서 1명 또는 복수의 고용주가 한 개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설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기금 	

5. 보험회사 투자성 금융상품 취급 확대

보험회사의 투자기능은 보험업의 본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무차원과 상품구조측면에서 투자실적 배당의 보험상품 성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며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는 미리 받는 보험료

가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전까지의 보유자산을 활용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반영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도록 하는 수지상등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유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운용은 보험회사의 보험 본래 업무수행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런 보험회사 자산 운용업무를 보험업무 수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구분된 자산운용업무를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집단투자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

보험상품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투자한 후 투자실적을 보험금 또는 환급금 결정에 반영하는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이 있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 또는 변액연금과 같이 변액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데 변액종신의 경우 실적배당률에 따라 종신보험금이 변동하며, 변액연금의 경우 연금이 변동하는 것이다. 단순히 투자자금의 회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순수 투자목적의 변액보험은 없다. 그럼에도 변액보험을 보험상품으로 보지 않고 투자상품으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능력에 기초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회사 투자기능과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상품 또는 투자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보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증권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상품 또는 투자업무 취급 사례는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겸 영업업무로 투자관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뉴욕주 보험법 제3222조에 의하여 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허용한 기금적립협정(funding agreement)업무는 보험계약의 정의와 관계없이 기금적립협정의 체결 또는 교부를 보험업(doing an insurance business)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금적립협정은 보험업이 인가된 사람 또는 그 자회사에는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보험업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entities) 및 개인에 대해서는 ① 합중국 또는 외국에 설치된 1974년 ERISA 소정의 종업원 퇴직연금 제도에 의거하는 연금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② 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제501

조 (c)에 의거 과세면제가 되는 단체 또는 유사단체의 활동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③ 연방정부, 주정부, 외국 또는 그러한 정치 하부조직 혹은 그러한 기관의 어떠한 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④ 청구권 변제의 정기적 지급을 제공하는 협정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또는 ⑤ 2500만 달러를 넘는 자산을 가지는 단체의 모든 제도에 대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금적립협정을 보험회사에 허용한 이유는 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이고 은행 등 다른 금융중개업자와 경쟁하여 금융 및 투자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¹¹⁴⁾.

유럽에서도 변액보험이외에도 Capital Redemption¹¹⁵⁾, Capitalisation¹¹⁶⁾, 연금기금관리(pension fund management) 등 투자성상품을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고, 톤틴연금(Tontines)과 같이 과거 국가재정 마련에 이용했던 보험상품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감채기금증권(sinking fund policy)도 사망 또는 생존과는 상관없지만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다. 즉, 보험상품은 개념적 정의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역사적 배경, 사회적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의 취급업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자산운용을 통하여 배양된 투자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성상품의 범위를 과감히 확대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우연한 보험사고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선진 주요외국의 사례에서 처럼 손해보장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품구조에 상관없이 일반개인들의 자금을

114)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 "Indemnity Agreements Related to the Securitization of Funding Agreements",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pinion. May 30, 2000.

115) 자본상환증권(Capital Redemption Policy)은 보험료의 지급과 교환하여 발행되는 자본상환계약이다. 보험료는 현금, 주식, 신탁, 채권, 사기업주식이나 기타 자산과 같은 미등록 증권 등이 될 수 있고 보험증권의 가치와 그것과 함께 평가된 자산을 대응시킨다. 자산의 가치는 시장의 움직임이나 환율에 따라 변동될 것이므로, 자본상환증권의 가치는 매일 변동되지만 보험증권을 현금화하거나 만기 전에 보장가치를 받을 권리는 없다. 자본상환증권은 소유자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체검사나 사망확률의 계산도 필요치 않다.

116) Capitalization이란 복권이 첨부된 장기적립저축으로 보험유사상품이나 최근에는 복권기능 없이 순수 장기적립저축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위탁관리하여 미래의 손해보장 또는 노후자금 등 보험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은 보험회사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한계로 사회보험만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노후보장 또는 보험보장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험회사의 위험보장기능을 활용한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본시장 발달로 2000년 이후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증권화 제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을 통한 보험자본 조달기능 및 보험리스크의 자본시장으로의 중개기능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선진금융기법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¹¹⁷⁾. 보험증권화는 보험성격과 증권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VI-7> 보험증권화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방안

구 분	세분업무	업무내용	대상법령
보험증권화	SPV설립	- 보험증권화를 위한 특별목적자회사의 설립 - 보험증권화 대상 보험리스크 이전시 이전받은 SPV에 대한 재보험감독 여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필요
	증권발행 등 관리업무 대행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보험증권화 관리업무 및 증권발행을 위한 사채 모집업무 등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필요
	보험증권화 대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대상 자산에 추가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는 보험부채 등	보험업법 또는 자산유동화법률 개정 필요

6. 보증관련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규제 명료화

보증보험은 금융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중첩성 상품 중 하나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으로 보증업무를 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우 신용공여의 한 수단

117) 유지호·최원,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증권화 활용방안 검토」, 『주간보험이슈(WII 제108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 5. 30.

으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들도 다른 기업의 지급보증을 하는 사례는 많다. 증권회사도 신용파생상품으로 신용스왑(CDS: credit default swap)¹¹⁸⁾ 등을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들도 신용면제 유예계약(DCDS: debt cancelation and debt suspension)을 대출계약의 부대계약으로 취급하고 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계약당사자 및 수익자와 계약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표 VI-8> 보증관련 금융상품 내용 비교

구분	사고성격	계약당사자	수익자	계약성격
지급보증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은행등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DCDS	사망, 화재 등 보험사고에 따른 대출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카드회사	카드 회사	부대계약
CDS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사건의 발생	보장매입자 (=채권자)와 보장매도자	채권자	자기를 위한 계약
신용생명·손해보험	사망, 화재 등 보험사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보험회사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보증보험	채무불이행	채무자와 보험회사	제3의 채권자	타인을 위한 계약
보증보험사의 신용보험	상품매매계약 등의 채무불이행	채권자와 보험회사	채권자	자기를 위한 계약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첫째, 은행등의 지급보증과 보증보험이 기능면에서 동일하므로 계약방법이 보험계약이나 지급보증이나 하는 것과 보증인이

118) 보장매도자가 특정 증권 또는 채권 발행인(채무자)의 파산 등의 신용사건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입자인 채권자에게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신용사건이란 도산, 합병에 따른 신용사건(credit event upon merger), 교차채무불이행, 신용등급하락, 지급불능, 지급거절,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은행등이나 보험회사이나 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능적 구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증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정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보험회사인 경우로 제한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신용파생상품과 신용보험간의 구분은 2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과 CDS는 사고성격, 계약당사자, 수익자 및 계약성격 등이 명확히 구분되나, 보증보험사가 취급하는 신용보험(상업채권에 대한 상업신용보험, 대출 등 채무채권에 대한 재정 신용보험)은 CDS와 유사하다. 따라서, CDS를 보증보험사 취급의 신용보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므로 우연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을 보장하는 CDS는 보험상품 영역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과 CDS의 구분 필요성은 CDS와 마찬가지로 DCDS가 신용생명보험 및 신용손해보험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 입장에서 신용보험과 DCDS의 유용성은 동일하므로 계약당사자가 다르다고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공제상품이 보험상품이지만 규제측면에서 적용배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주체를 달리 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한 DCDS를 신용보험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도 없고 그러한 기능적 정의도 어렵다.

넷째, 신용생명보험, 신용손해보험 및 보증보험사의 신용보험의 구분은 보험상품 내에서의 구분이므로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관련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부 보험상품의 정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증보험의 정의에서는 보증인이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제하고,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은 추가로 법령에 열거함으로써 신용보험의 영역을 분명히 하여 CDS 또는 DCDS와의 불필요한 논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5896) 검토보고』, 2007. 2.
- 박찬일, 『금융제도의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1995.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2002. 12.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9.
- 유지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재검토 필요」, 『주간 보험이슈(WII 제97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9. 15.
-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2004.1.
- 이상제,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와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2.
- 재정경제부, 『금융투자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보도자료)』, 2006
- _____,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차관회의 자료)」, 2006. 12. 28.
- _____,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2006.2.
- _____,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6.
- 조해균, 『최신보험경영론』, 박영사, 2000. 2.
- 하삼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보완대책」, 『고려법학 4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한국개발연구원, 『통합금융법 제정을 위한 업무영역·제재·적기시정조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04년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KDI 발표자료.
- 한기정, 「금융투자업법의 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에 미칠 영향」, 『보험개발연구』, 제51호, 보험개발원, 2007.6

- 吉澤卓載, " 保險商品と金融商品の交錯 ", 『保險學雜誌』 Vol.586, 2004.9
- GAO, "Definition of Insurance and Related Information", Letter to House of Representative, February 23, 2003.
- Holmes, Eric M., and Mark S. Rhodes, *Holmes's Appleman on Insurance, 2d*, St. Paul, MN, West Publishing Co., 1996.
- Keeton, Robert E. and Alan I. Widiss, *Insurance Law, A Guide to Fundamental Principles, Legal Doctrines, and Commercial Practices*, West Publishing Co., 1988.
- Kulp, C.A., "Social and Private Insura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Chartered Life Underwriters*, June 1952.
- Mehr, Robert I., and Robert W. Osler, *Modern Life Insuranc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9.
- Pfeffer, Irving, *Insurance and Economic Theory*, Richard D. Irwin, Homewood, IL, 1956.
- Porat, M. Moshe, and Michael R. Powers, "What Is 'Insurance?' Lessons from the Captive Insurance Tax Controversy,"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Vol. 2, No. 2, Winter 1999, 72-80.
- Susanne Sclafane, "Finite Challenges Prompt New Insurance Definition", *National Underwriter Property & Casualty*, September 4, 2006.
- Todd, Jerry D., Kueber, Michael A., O'Keefe, Patrick,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Insurance : is it challenging", *CPCU Journal Vol.53*, Winter 2000.
- Willett, Allan H., *The Economic Theory of Risk and Insurance*, Richard D. Irwin, Homewood, IL, 1951.

- <http://law.e-gov.go.jp/htmldata/H07/H07HO105.html>(일본 보험업법)
- <http://www.shimizu-s.org/~topics/page002.html>(일본 금융상품거래법)
- <http://fsahandbook.info/FSA/html/handbook/>(영국 FSA Handbook)
-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lia1995144/(호주 보험법)
- <http://caselaw.lp.findlaw.com/nycodes/c52/a6.html>(미국뉴욕주 보험법)
- http://www.leginfo.ca.gov/.html/ins_table_of_contents.html(미국캘리포니아 보험법)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경쟁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3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3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9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캠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경영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6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이기형 2008.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
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
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 | |
|-----|--|
| 20호 |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 21호 |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 22호 |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 23호 |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 24호 |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 25호 |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 26호 |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경 2008.2 |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6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 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손해보험본부 2004. 12
-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정기간행물

<p>■ 계간 _____</p> <p>○ 보험동향</p> <p>○ 보험개발연구</p>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8~10회/년) ·조사연구자료(3~5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8~10회/년) ·조사연구자료(3~5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414,4415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
 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유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정책연구팀 팀장
(E-mail : jhyu@kid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석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
(E-mail : kidiwon@kidi.or.kr)

정책연구자료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08년 3월 일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400

ISBN 978-89-5710-067-7 94320

정가 10,000원